

함께하는 FTA

March 2016 vol.46

TPP
서명 ('16.2.4)

정식 서명한 TPP 향후 쟁점과 대응 전략
클레이 펀리 주한 뉴질랜드 대사 인터뷰

한중FTA 활용, 1380 차이나데스크에 다 있다!

'차이나데스크'는 한중FTA 활용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한중FTA 활용, 차이나데스크 상담은?

국번 없이 1380

<http://fta1380.or.kr>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3층 방문

글 김선녀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FTA 컨설턴트 민경원 관세사

보다 많은 기업에 FTA 활용 지원 사업을 알리려 합니다

국제통상학을 전공한 민경원 관세사는 대학시절 무역법규 관련 수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 전공을 살리고 싶었지만 취업보다는 다른 분야의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관련 직종을 알아보다 관세사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렇게 인연이 닳은 관세사 일을 시작한 지 올해로 5년 차다. 초반 2년 정도는 통관 관련 업무를 주로 하다 2014년부터 FTA 종합지원센터의 컨설턴트로 FTA와도 끈끈한 인연을 맺게 되었다.

민경원 관세사가 학생이었던 2000년대 초반에는 FTA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FTA 체결이 활발해지면서 FTA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관세사 합격 인원이 75명에서 90명으로 늘어난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덕분에 기존에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관세사라는 직업의 인지도 역시 전보다 높아졌다.

“예전에 비해 젊은 관세사들이 많아졌어요. FTA는

기존의 무역과는 조금 다른 법규에 속합니다. 그러나 보니 젊은 관세사들의 능력과 기질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민경원 관세사는 2016년 지역 컨설턴트로 임명되어 3월부터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FTA 컨설팅을 하게 되었다. 그는 올해 FTA 활용 지원 사업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관세사가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200여 개의 기업들을 컨설팅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원 사업에 대해 알지 못해 FTA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봐왔기 때문이다.

“FTA 종합지원센터 1380에 비해 지역센터 등의 기타 프로그램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 활용 수요가 낮은 편입니다. 올해는 입주 기업체의 모임 등에 참석해 무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리고, 매달 더 많은 참여 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Contents

March 2016 vol.46



COVER STORY

지난 2월 4일
뉴질랜드에서 TPP 12개
참여국이 공식 서명했다.
앞으로 정식 발효까지
2년여의 시간 동안 TPP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한국의 참여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표지일러스트 서용남

함께하는 FTA

발행일 2016년 3월 4일(통권 46호)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문의 044-203-4131)

발행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작협력 한국경제매거진

'함께하는 FTA'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저자의 견해로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TA People

- 01 2016년 FTA 컨설턴트 민경원 관세사

Issue Focus

- 04 한·중 FTA 종합대전 개최

- 06 2016년 FTA 컨설턴트 발대식

- 08 Global FTA News

FTA Cartoon

- 10 대한민국 9단의 선택은?

안종만

Cover Story

- TPP 12개국 공식 서명

- 12 TPP 향후 생점 및 대응 전략

- 16 TPP 발효가 한국에 미치는 효과

Special Report

- 18 한·중 FTA와 APTA 전격 비교 ①
이민선 관세사(FTA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 20 FTA 현장의 목소리

안은숙(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과장)

- 22 2016년 FTA 활용 성공사례집 발간

Power Interview

- 24 클레어 편리 주한 뉴질랜드 대사

FTA & Company

- 26 2015 FTA 활용 경진대회 수상기업 탐방:
(주)EJP Korea(최우수상)

FTA Study

- 28 한·이스라엘 FTA의 추진과 의의
박정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 30 실전품목분류: ⑩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이민선 관세사(FTA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 32 한·중 FTA와 지식재산권:
⑩중국 지식재산권 계약 – 전리권 Ⅱ
손보인 변호사·변리사(법무법인 위민)

- 34 실전 FTA 활용 노하우:
한·베트남 FTA 주요 내용 및 활용 방안②
유영진 관세사(FTA종합지원센터 FTA활용지원실)

- 36 FTA 사후검증tip:
효과적인 한·미 FTA 사후검증 서류 작성법②
유영웅 관세사(FTA종합지원센터 FTA원산지지원실)

Art & Culture

- 40 최효찬의 인문학 강의:
⑯미디어의 이해

FTA News

- 42 한·중미 FTA 제3차 협상 개최 등

FTA Square

- 44 FTA 정보&독자의 소리



글 이현주 기자

사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번 한·중 FTA 종합대전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등 국내 수출유관기관이 모두 협력해 대중 수출을 위한 지원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한·중 FTA 종합대전 개최

수출유관기관 손잡고 중국 내수시장 진출 박차

국내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해 수출 지원 기관들이 협력해 중국시장 진출 지원에 나섰다. 2월 25일에 열린 '한·중 FTA 종합대전'은 국내 900여 개사와 중국바이어 및 투자가 230여 개사가 한 자리에 모여 한국과 중국 간 무역 증진을 위해 방안을 모색했던 자리로, 한·중 FTA에 대한 양국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등과 협력해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에 걸쳐 코엑스에서 '한·중 FTA 종합대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900개사 참가해 징동(중국 2위 전자상거래), 하이얼(중국 최대 가전사) 등 중국 바이어 209개사, DT Capital Partners(포브스 선정 중국 최고 글로벌 투자전문사) 등 투자가 21개사와 열띤 비즈니스 상담을 벌였다.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22개 성시 대표 유통망 초청

이번 한·중 FTA 종합대전에서는 중국 내수 소비재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소비재관을 대규모로 구성하였고, 여기에 한·중 FTA 발효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 품목인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분야의 우리 소비재 수



국내 900여 개사와 중국바이어 및 투자가 230여 개사가 한 자리에 모여 열띤 비즈니스 상담을 받았다.

출 기업 640개사가 참가했다. 특히, 중국의 대표 유통망은 전국 31개성과 거점 도시별로 활동하는 특성을 감안해 쑤닝(난징) 등 22개 주요 성시(省市)의 대표 유통망과 주요 수입벤더 163개사를 초청해 수출 성약 가능성을 높였다.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汉)시 대표 유통망인 우양량판(武商量販)의 해외영업부장은 "그동안 수입대리상을 거쳐 한국산 상품을 수입했지만, 이제부터 직접 수입계약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한·중 FTA로 48시간 통관이 가능해진 점을 활용해 한국산 유수, 해산물 등 단기보존 식품 수입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한시 수입벤더인 아이쯔자(愛之家)와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MOU를 체결한 국내 유아용품 전문기업인 아기자기 대표는 "중국 정부의 두 자녀 정책의 영향으로 내수시장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현지 유통망 진출에 발품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소비재 수출 300개사 'e-파워 300' 공동 선정 및 지원 최초 시도

대중 소비재 신규 수출 창출과 확대를 위해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유망 소비재기업을 각 기관별로 100개사씩 총 300개사를 선정해 'e-파워 300' 기업으로 위촉했다. 3개 수출지원기관은 선정된 소비재 기업들의 수출 지원 목표를 전년 실제 수출 실적 대비 상향 설정하고, 기관별 전자상거래 수출마케팅사업을 통해 올해 목표 달성을 적극 지원한다. 이 같이 수출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선정한 기업의 수출 목표를 전년보

다 늘려서 정하는 방식은 이번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한편, 이날 중국 소비재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가 열려 중국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출방안, 한·중 FTA 활용방안 등이 소개됐다. 설명회에서는 최근 가장 큰 화두인 중국 온라인 유통시장과 2·3선 도시 진출 관련 정보를 제공해 호평을 받았다.

한·중 양국 기업 간 벤류체인(VC) 연계 지원 및 수출형 투자유치 확대

중국은 지난해 '중국제조 2025' 전략을 발표,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에 중국 글로벌 제조기업의 소재, 부품, 신기술 수요를 발굴해 국내 유망기업과 소재·부품, 반제품 공급, 아웃소싱, R&D, 조립공정 이전, 기술협력 등 벤류체인(Value Chain) 연계를 지원하는 비즈니스 상담회를 열었다. 아울러 기술협력포럼을 개최, 국내기업 보유 특허 및 기술을 중국기업에 소개하고 기술거래 상담도 지원했다. 아울러 화장품, 패션, 미용, IT, 바이오, 문화콘텐츠 등 근래 중국 자본의 투자진출이 활발한 분야에서 중국 투자가와 중국 진출 잠재력이 높은 국내기업 간 수출형 투자유치를 목표로 1:1 투자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작년 9월 중국경제사절단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상담회도 개최되었는데, 대통령 중국 순방의 경제협력 의제였던 보건·의료, IT·정보보안, 전자상거래·유통분야, 문화콘텐츠 분야의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기업과 상담장을 마련했다.❷

글 김선녀 기자
사진 한국무역협회

관세사 30명, 원산지관리사 6명 등 총 36명으로 구성된 2016년 FTA 컨설턴트들은 앞으로 1년간 각 지역에서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다양한 컨설팅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2016년 FTA 컨설턴트 발대식

2016년 중소기업 FTA 활용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2016년 새롭게 임명된 FTA 컨설턴트 36명의 발대식이 열렸다. 관세사와 원산지관리사로 구성된 FTA 컨설턴트들은 올 한해 각 지역에서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는 2월 17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2016년도 지역 FTA 전문 컨설턴트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FTA 컨설턴트, 지역센터 담당자, 산업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통상부와 FTA종합지원센터는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컨설턴트 총 33명을 각 지역에 파견해 9412개의 무료상담, 2116회의 방문 컨설턴트 등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관세사 30명, 원산지관리사 6명 등 총 36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한·중 FTA 발효 후 활용 수요가 많은 경기, 경남, 인천 지역에 관세사를 추가로 파견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 컨설턴트들의 도움 꼭 필요해

발대식에 참여한 이호동 통상국내대책관은 축사를 통해 "대중 수출 기업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년보다 FTA 활용지원사업을 초기에 시행하고 있고, 차이나데이크, 활용지원센터, 한·중

FTA 전담기관을 확충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정부가 한·중 FTA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하지 않으면 새로운 기회는 오지 않는다"며 "2016년에 위촉된 컨설턴트들이 중소기업이라는 구슬을 잘 엮을 수 있도록 도와 중소기업의 매출 확대와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컨설턴트들은 이호동 통상국내대책관에게 위촉장을 수여받고, 결의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앞으로 1년간 지역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위해 원산지 관리 및 판정,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증빙서류 관리 컨설팅 등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오후에는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활용촉진과 정록환 사무관이 '2016년 FTA 활용지원사업 추진 방향 및 계획'을 발표하고, 박지은 국제무역연구원이 '2016년 주요 FTA 추진현황과 전망'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6년 FTA 활용지원사업 개요

FTA 전담지원 기관

- FTA 종합지원센터(무역협회)
- 지역FTA 활용지원센터(전국17개소)

FTA 상담 및 이해

- FTA콜센터 1380
 - 차이나데스크
- FTA 해외 활용지원센터
 -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청두) 기설치
 -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2016. 3. 설치예정

FTA 교육

- FTA 전문인력양성
- FTA 활용재직자교육
- 공급망 교육
- CEO FTA 활용 인식 제고, 성공사례 전파

FTA 활용 지원제도

- FTA 현장 컨설팅
 - OK FTA, 영세기업 원산지관리
- 찾아가는 FTA 서비스
- 원산지확인서 제3차 확인사업
- 원산지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농수산식품 특화시스템 보급
- 원산지관리 우수기업 인증사업 등

MINI INTERVIEW

김민주 관세사(경남FTA 활용지원센터)

"올해도 발로 뛰는 FTA 컨설턴트가 되겠습니다"

관세사를 시작한 지는 2년 정도 되었고, FTA 컨설턴트로 위촉되어 작년 6월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FTA 컨설팅 모토는 'FTA 미활용 기업을 활용 기업으로 전환하자'였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FTA를 전혀 몰랐거나 컨설팅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기업들이 FTA에 대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증명서 발행 부분입니다. 특히 한·중 FTA가 발효되면서 바이어들이 이전까지는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던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고, 증명서 없이는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많아 당황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증명서 발급에 관한 많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얼마 전 연말 워크숍을 통해 작년 중소기업 FTA 활용률이 60%가 넘어 목표치를 달성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열심히 발로 뛴 만큼 그 결과가 눈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 많은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또 상담을 통해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시는 분들을 만나도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2016년은 중국은 물론 베트남과 뉴질랜드 등 새로 발효된 FTA들이 많아 새로운 협정에 대한 문의도 많아졌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FTA에 대한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증명서 발급 뿐 아니라 향후 5년간 꼭 필요한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상담해 드릴 계획입니다.❷



전국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컨설턴트들은 이호동 통상국내대책관에게 위촉장을 수여받고, 결의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글 김선녀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Global FTA News



[Vietnam-EU FTA]

베트남, 유럽으로 가는 문을 열다



2016년 2월 1일 EU 집행위는 EU-베트남 FTA 협정문 전문을 공개했다. 베트남과 EU는 2015년 8월 4일 FTA 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한 후 12월 2일 서명식을 가졌다. 이번 공개된 FTA 협정문은 총 18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특혜특별조치, 행정오류 관리 예산조항, 관세행정협력 이슈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품목의 양허 스케줄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품목이 FTA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무관세가 적용되며, 몇몇 민감품목의 경우 단계별로 철폐된다. 세실리아 말름스터롬 EU 집행위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베트남과의 FTA로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인구 9000만 명에 이르는 거대 시장인 베트남 시장에 대한 진출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크게 고무된다”고 밝혔다.

EU-베트남 FTA 협정에 따라 대부분의 품목이 발효 즉시 무관세가 되므로, 베트남에 진출해 EU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상당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의류, 신발, 자동차 품목 등이 주요 수혜품목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부 민감품목들은 발효 후 즉시 철폐가 아니라 4년, 6년, 8년 후 무관세가 되는 등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므로 우리 기업들은 세부 양허스케줄에서 자사 품목의 양허스케줄을 확인해 향후 발효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Malaysia]

말레이시아, TPP 찬반론 속에 국회 비준 완료

말레이시아 상원은 2016년 1월 28일 말레이시아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공식적으로 서명하도록 승인했으며, 말레이시아 하원도 2016년 1월 27일에 찬성 127표 대 반대 84표로 TPP를 비준하여 2월 4일 서명식을 마쳤다. 앞으로 TPP 협약이 발효되기까지 약 24개월 동안 17개 관련법의 26개 수정안이 비준되어야 한다. TPP에 대한 찬성론자들은 TPP 가맹국인 12개국이 8억 소비시장을 형성하며 세계 GDP의 40%를 차지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역내에서 커져가는 중국의 영향력을 경제하고,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또 다른 시장으로 TPP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TPP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향후 동남아 외국인투자자들을 베트남 등 다른 TPP 국가로 빼앗길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내에서는 여전히 반대여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TPP는 본질적으로 말레이시에 권리를 잠식해 가는 경제식민정책의 일환이라고 비난하며 특히, 투자자-국가 간 분쟁소송(ICS)의 결과로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쓸모없거나 값비싼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TPP 충격흡수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 및 재정 지원도 불가능해져 30%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문을 닫거나 실직자들이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EU-Ukraine FTA]

2016 우크라이나에 변화의 바람이 불다



2016년 1월 1일 우크라이나와 EU 간의 FTA가 발효되었다. EU는 우크라이나 대외 수출 비중의 약 35%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지역이자 우크라이나 외국인직접투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투자 파트너이다. 이미 EU측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 FTA를 통해 양 지역 간 자유무역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번 FTA로 우크라이나와 EU는 각각 전체 품목의 99.1%, 98.1%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연평균 7억5000만 유로의 관세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EU는 우크라이나의 단계적 관세 철폐를 용인함으로써 우크라이나가 EU 표준에 맞출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기로 했다. 향후 우크라이나는 EU 표준에 맞추기 위해 각종 법제 개혁 및 산업시설 현대화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번 FTA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EU 경제존에 본격 편입됨으로써 양 지역 간 경제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며, 향후 EU-우크라이나 간 무비자 협정, 우크라이나의 유로존 가입 등을 위한 중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값싼 농산물이 EU로 자유롭게 수출될 수 있는 길이 열려 향후 우크라이나 농업시설 현대화, 노동 조건 개선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우크라이나의 친 EU 행보에 따라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Bangladesh-China]

방글라데시의 문을 두드리는 중국

2015년 11월 발표된 방글라데시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수출이 EU와 미국에 편중돼 있다. 특히, 중국, 인도, ASEAN 등 인근 거대시장에 대한 수출비중이 매우 낮음에 우려를 표하며 중국, 인도와의 통상협정이 방글라데시 내에서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지난 2014년 12월 27일 다카에서 개최된 외교장관 회의에서 방글라데시와 FTA 협상 개시를 희망한다고 밝히는 등 대방글라데시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방글라데시는 스리랑카, 파키스탄과 같이 중국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해상실크로드’의 거점으로, 현재 중국은 방글라데시에 대해 대규모 지원 패키지를 제공 중이다. 또한 최근 중국 기업들의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매입 수요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는 향후 중국발 소싱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의도로 대중국 의류 수출 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으며 양자무역협정을 통한 관세 인하가 동반될 경우 그 효과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글라데시 수입시장의 관세장벽이 워낙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과 방글라데시 간 무역협정이 체결되고 관세가 철폐·인하된다면 우리 기업에게 있어 상당 규모의 시장 상실이 예상된다. 특히, 기계류 시장 등에서 중국 기업들이 1년의 지금 유예 등 유리한 결제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우리 제품의 품질 경쟁력에 대해 보다 높은 요구를 충족해야 함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

카툰 안종만

대한민국 9단의 선택은?



12 members signed TPP on 4th February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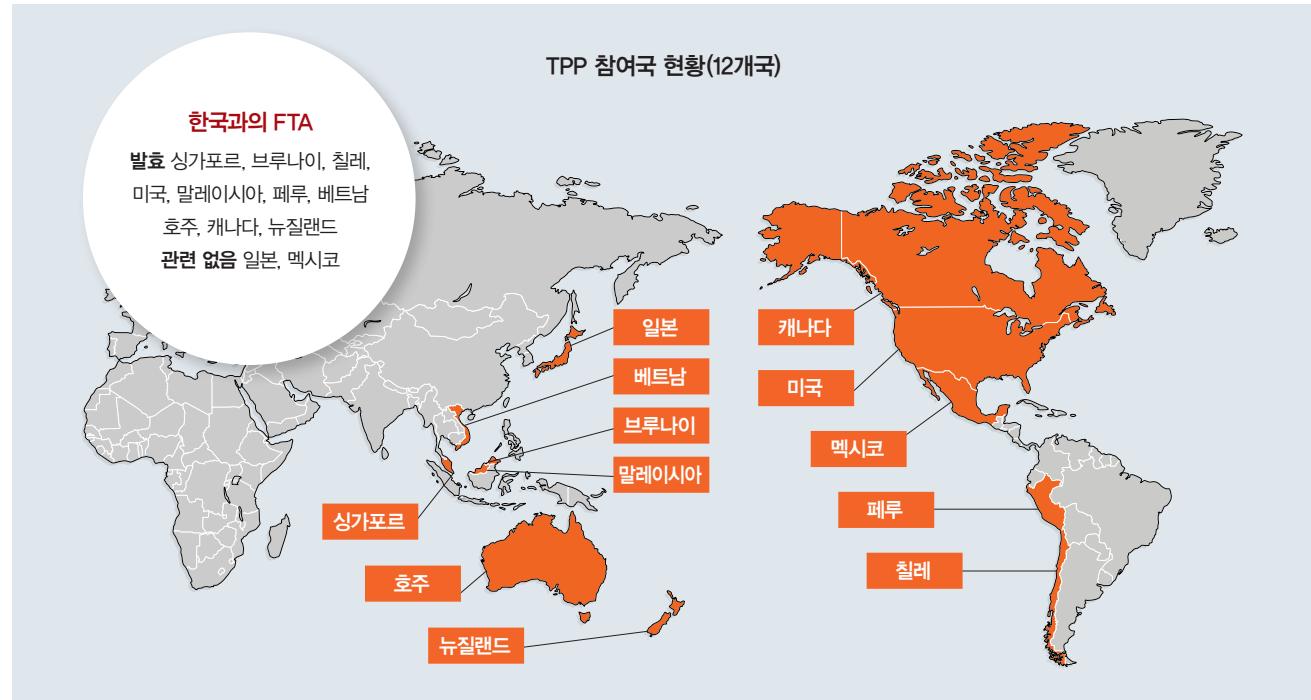
TPP 12개국 공식 서명

지난해 통상 분야 최대 관심사이자 제1의 키워드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아직 공식적으로 참여하지도 않고 있는 협정이 주목을 받은 데에는 최초로 타결된 메가 FTA라는 기념비적 의미도 있지만, 향후 우리가 무조건적인 가입을 고려해야 할 만큼의 중요한 경제적, 정치외교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FTA를 통한 통상질서와 교역환경을 주도해 온 우리가 TPP 불참 하나로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미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한 우리는 지난달 초 공식 서명된 TPP의 향후 절차와 과제, 각 국의 반응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글 박정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1 TPP 향후 쟁점 및 대응 전략

2 TPP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TPP 향후 쟁점 및 대응 전략

TPP 발효까지 앞으로 2년, 치밀한 전략 필요해

TPP가 본격적인 주목을 받은 것은 미국과 일본이 합류한 2008년과 2013년이지만, 2005년 6월부터 이미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돼왔다.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4개국으로 시작돼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TPP가 몸집을 불리며 세계통상체제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여러 진통 끝에 작년 10월, 출범 10년 만에 전격 타결되더니 바로 한 달 후인 11월 TPP의 저장소(the Depository) 역할을 하는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홈페이지를 통해 협정문이 전격 공개됐다.

총 30개의 챕터, 부속서를 포함하면 2,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의 협정문이 비록 법적 검토를 완료하기 전이라고는 해도 이처럼 단기간 내 공개된 것은 전례에 보기 드문 일이다. 이어 약 3달 뒤인 지난 2월

4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최대 도시 오클랜드에서 12개국이 공식 서명했다. 이어 공식 서명된 TPP 협정문이 다시 공개됐다. 타결까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타결 이후엔 일사천리로 공식 서명절차까지 완료한 TPP가 정식 발효되기까지는 이제 12개 서명국들의 국내 비준 절차만이 남았다고 볼 수 있다. 각국은 조기 발효를 목표로 자국 의회의 승인을 재촉하고 있지만 최대 2년까지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현실적인 예상이다.

TPP 협정 공식 발효 요건의 검토

TPP의 발효 요건에 대한 내용은 협정문 30장 최종 규정(Final Provisions)의 5조(Article 30.5: Entry

into Force)에서 다루고 있다. 가장 이상적인 발효 요건은 1절에 기술돼 있는데, 12개 서명국 전원이 국내 법상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이를 서면으로 뉴질랜드에 제출하면 60일 뒤에 TPP 협정이 발효되는 것이다.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60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all original signatories have notified the Depository in writing of the completion of their applicable legal procedures.

그러나 협정문이 서명되고 2년 이내, 즉 2018년 2월까지 12개국 모두의 국내적 절차가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효 요건이 조금 복잡해진다. 이 경우에는 당시까지 서명국 전체 GDP(2013년 IMF의 US 달러 기준 GDP)의 85%를 차지하는 6개국(원서명국의 50%)이상의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될 시 2년 만료 시점에서 60일 이후에 비준 완료 국가에 한정해서 협정이 발효되게 된다. 즉, GDP 85% 이상을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이 국내 비준 절차를 1년 3개월여 만에 완료했다고 가정해도, 서명 이후 2년이 지난 시점까지는 협정이 발효되지 않는다.(30.5조 2절)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정식 서명 이후 2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협정이 발효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어느 때고 역시 서명국 전체 GDP의 85%를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이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한 시점에서 60일만 지나면 해당 국가들에 한정해 협정이 발효되게 된다.(30.5조 3절) GDP의 관점에서는 2013년 기준을 보면 서명국 전체 GDP의 60.4%를 차지하는 미국이나 일본(17.7%) 중 어느 한 국가라도 국내 비준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TPP는 절대 발효될 수 없는 셈이다.

이어 30.5조 4절과 5절에 근거하면, 협정이 우선

2013년 기준 GDP 비중 - IMF US 달러			
미국	60.4%	싱가포르	1.1%
일본	17.7%	칠레	1.0%
캐나다	6.6%	뉴질랜드	0.7%
호주	5.4%	페루	0.7%
멕시코	4.5%	베트남	0.6%
말레이시아	1.1%	브루나이	0.1%

발효된 6개국 외의 국가들은 추후 각자의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되면 협정문 27.1조에 따라 설치된 TPP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 발효를 하게 된다. TPP 원(元)참여국이 아닌 국가도 협정문 30.4조에 따라 TPP에 신규 가입할 수 있는데(2015년 12월호, 2016년 2월호 참고), 우선 관심을 표명한 뒤 예비 양자협의를 거쳐 공식 참여 선언을 해야 한다. 이후, 기존 참여국들의 승인을 받아 공식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2015년 기준으로 관심표명국은 한국과 더불어 콜롬비아, 태국, 필리핀, 여기에 최근 당선된 차이잉원 총통의 대만이다.

주요국의 반응과 향후 과제: 미국

미국과 일본은 가입시기의 관점에서는 TPP 후발주자에 가깝지만 사실상 협상을 주도해왔다. TPP가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의 양자 FTA에 비유되는 이유다. 이는 중국을 견제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 새균형 정책과 아베 신조 일총리의 아베노믹스에서 숨은 의도를 찾을 수 있는데, 이런 전략적 측면과 더불어 GDP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분배에서 미국의 향후 국내 비준 절차는 TPP 발효에 절대적이다. 미국의회의 비준과 TPP 발효가 상호간 필요충분조건까지는 아니지만 미국 국내 절차 완료가 TPP 발효의 필요조건인 것은 자명한 논리다.

하지만 당장 11월 8일에 제45대 대통령 선거와 상원의원 및 12개 주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있어 TPP를 위한 향후 행보가 결코 녹록하지 않다. 이미 작년 6월

민주당 하원이 무역조정지원제도(Trade Adjustment Assistance, TAA) 법안 부결로 TPP에 제동을 걸었던 바 있는데다, TPP에 찬성하는 공화당도 일부에서는 신약특허기간을 양보한 것과 환율조작국의 미지정 등에 대해 여전히 불만을 피력하고 있다.

가장 큰 부담은 역시 유력 대선후보들이 TPP에 부정적이라는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FTA를 지지하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일자리 창출, 임금 제고, 안보 촉진 분야에서의 부족함을 이유로 TPP에 대해서만큼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공화당의 유력 대선후보로 자리매김한 도널드 트럼프는 TPP 반대의사가 더 확고하다. 이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다른 FTA 등으로 인해 외국 상품이 미국시장과 일자리 시장을 동시에 잠식, 점령했다며 TPP 추진 중단 의사를 보였다. 힐러리와 경쟁하는 버니 샌더스 대선 경선 후보는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TPP를 '재앙과 같은 쳐참한 무역정책'에 비유하며 완고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야말로 안개 속 혼국이다.

협상주도국인 미국에서 조차 찬반의 온도차가 극명해지면서 본격적인 비준 논의는 대선이 마무리되고 새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이나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공화당 측은 11월 대선 이전까지는 TPP를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전 집권당인 보수당보다 TPP에 부정적인 자유당이 새로이 집권한 캐나다를 비롯해 기타 TPP 서명국들이 우선적으로는 미국 의회의 동태를 관찰한 뒤 자국 비준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 내 갈등은 향후 TPP 발효 전망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TPP 의회비준뿐만 아니라 연내 유럽연합(EU)와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 남아프리카관세동맹(South African Customs Union, SACU)¹, 안데안공동체(Comunidad Andina, CAN)², 에콰도르, 아랍에미리트(UAE), 말레이시아, 태국과의 FTA 협상도 진행 예정인 미국의

속내는 대선과 맞물려 복잡하기만 하다.

주요국의 반응과 향후 과제: 일본

TPP 서명국 중 우리가 가장 의식하는 국가 중 하나는 단연 세계 시장에서 주력상품 경쟁이 침예한 일본을 꼽을 수 있다. 일본은 이전까지 FTA에 있어서 비교적 소극적인 정책을 펴왔던 바 있는데 TPP 참여로 단번에 세계 통상질서의 주도권 경쟁 대열에 합류했다.

농업 분야 등 자유무역을 통한 추가시장개방에 민감한 산업군의 반대와 우려는 여전하지만 '잃어버린 20년'으로 대변되는 장기간 경기침체로 무조건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기에는 부담이 없지 않고, 이에 따라 자유무역을 활용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이익집단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주목 받는다. 실제 작년 TPP 타결 직후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의 59%가 TPP에 대해 지지 의견을 보였고 반대 의견은 불과 28%에 그쳤다. 2013년 3월 TPP에 첫 참여의사를 나타냈던 당시 찬성여론이 35%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 팔목한만한 상승세다.

미국에 비해서 여론이나 국가 기조가 TPP에 우호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국내 비준 절차에 아무런 장벽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베 총리의 핵심 최측근으로써 아베노믹스를 이끌고, 동시에 TPP를 적극 추진하던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재생담당상이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1월 사임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아마리 전 재정상의 불명예 퇴진은 4월 이후로 예상됐던 TPP 국회심사 및 7월 예정돼있는 참의원 통상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향후 TPP 협상을 어렵게 하고 아베노믹스와 TPP 자체에 대한 반대여론이 부상할 가능성이 생겼다. 아베 총리와 여권인 자민당은 그간 나름 순조롭게 진행해오던 경기 회복 노력에 암초를 만난 것으로, 야권에서는 대여공세 최대의 호재를 맞이한 것으로 평가된다.

TPP 국내 절차에 이어 캐나다, 터키, 포괄적경제



미국은 오는 11월 8일 제45대 대통령선거와 상하원의원 및 12개주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있어 TPP를 위한 향후 행보가 결코 놓칠 수 없다.



3 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³ 협상을 줄줄이 앞두고 있는 일본도 내부단속이 절실하다.

주요국의 반응과 향후 과제: 베트남

협상 주도국은 아니지만 TPP 내에서 가장 주목 받는 국가 중 하나가 바로 베트남이다. 베트남은 TPP 최대 수혜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TPP 내 누적원산지 제도(2015년 11월호 참고)와 더불어서 글로벌 생산기지이자 신(新)글로벌허브로 많은 관심이 쏠리기 때문이다.

이번 TPP로 베트남의 글로벌생산기지화는 더욱 가속될 전망인데, 특히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베트남 내에서는 이를 통해 최소 연간 성장률 6% 이상의 장기간 고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섬유의류, 수산물, 물류운송, 부동산, 금융 등이 주목 받는 분야다. 최근 5년간 대(對)베트남투자액에서 일본, 싱가포르 등 TPP 참여국을 앞섰던 한국도 빠르게 베트남 거점화에 나섰다.

공공, 가계부채 증가와 외환보유액 감소, 아시아 최고 속도의 고령화로 위기의식을 느끼던 베트남 입장에서는 이번 TPP가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 외국기업에 대한 맞춤형 우대조건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도모하고 있는 만큼 5월로 예정돼있는 제 14대 국회의원 및 인민회

의 의원 선거와는 무관하게 현재로썬 TPP 국내 비준 절차에 큰 장벽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베트남은 연내 EU와의 FTA를 발효시키고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⁴, RCEP에서도 진도를 나갈 예정이다.

그 외 국가들

TPP 발효에 서명국들의 노력이 지대하다. 뉴질랜드 곳곳 반대 시위가 여전하지만, 호주와 함께 각 주의 회에서 비준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싱가포르도 연내 승인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말레이시아는 의회가 이미 TPP를 승인한 상태다.

시사점

태동부터 전격타결, 서명까지 10여년의 시간이 소요됐지만 TPP의 정식 발효까지는 앞으로도 약 2년여의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TPP에 관심을 표명한 만큼 이 시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기간 한·중 FTA 등 우리만이 갖고 있는 기존 FTA들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필요한 조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개정 노력도 이뤄져야 한다. 한국 외에 TPP에 공식적인 관심표명국들인 대만, 콜롬비아, 태국, 필리핀 등과 협조하되, 독자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도적이고 자립적인 자세와 행보를 보일 필요가 있다.

1 1910년에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관세동맹 중 하나로 평가 받으며,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보츠와나, 스와질란드가 회원국으로 참여 중이다.

2 브리타니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가 회원국이며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파라과이 등이 준회원국 자격으로 참여 중이다.

글 우종국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TPP 발효가 한국에 미치는 효과

TPP 발효 시 역내 중간재 수입 비중 확대 예상,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에게는 유리

지난 2월 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12개 회원국이 TPP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후 회원국들은 국내 비준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제부터는 TPP 체결국들의 무역구조와 발효 이후 경제 효과 등을 고려한 신중하고 적극적인 TPP 가입여부 결정이 필요하다.

TPP가 발효되면 회원국 간 역내 소비재 수출 비중과 역내 중간재 수입 비중이 확대되고 회원국 간 가치사슬에 따른 분업구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무역연구원(한국무역협회)에서 2월 4일 발간한 'TPP 정식서명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TPP 발효를 가정해 2030년 기준 TPP 회원국의 GDP가 TPP 미발효 시에 비해 0.5~8.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한국은 동일한 기준으로 GDP는 0.3% 감

소하고 수출은 1.0% 감소할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는 원산지 충족을 위해 TPP 역내산이 역외산인 한국 제품을 대체하거나 한·미 FTA에 따른 혜택이 잠식당하는 데서 기인한다.

TPP 통해 한국의 전방참여도 높일 수 있어

세계교역에서 TPP 체결국 수출비중은 상품 26%(2015년), 서비스 25%(2014년)이다. TPP 체결국의 GDP 규모는 27.5조 달러로 세계 GDP의 37.4%를 차지하며, EU(16.2조 달러)의 1.7배 수준에 해당한다. 수출(수입)액은 2014년 기준 상품이 4.4조(5.2조)달러, 서비스는 1.2조(1.0조)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2015년 들어 TPP 체결국의 상품무역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TPP 체결국의 품목별 무역구조를 살펴보면 가공단계별로는 수출에서는 소비재, 수입에서는 중간재의 역내무역 비중이 높은 편으로 수출은 소비재의 역내 수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수입에서는 중간재의 역내 조달비중이 여타 1차 산품, 자본재, 소비재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TPP의 역내 수입은 기계류, 광산물, 전기전자, 농림수산물 비중이 높은 가운데 최근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일반기계, 섬유류의 수입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TPP 상위 수입품목 또는 비중 증가 품목은 모두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에 해당한다.

TPP 12개국의 글로벌가치사슬(GVC)상 후방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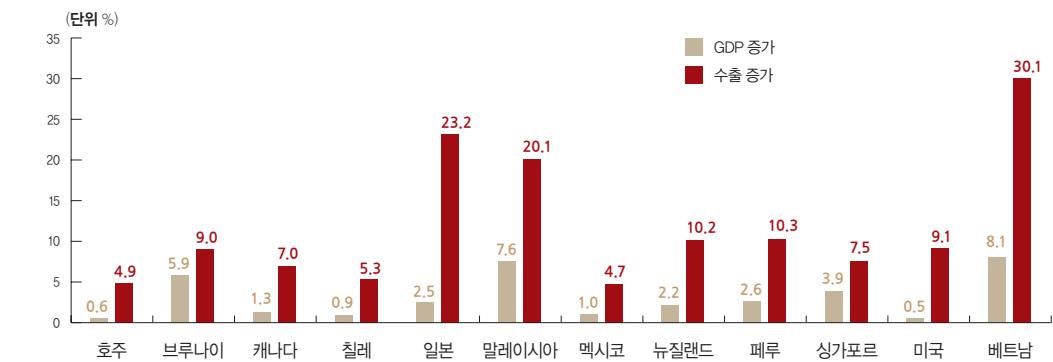
TPP 체결국의 GVC 전후방 참여 비중

(단위 %)

구분	국가	전산업		제조업	
		수출 국내 부가가치율	후방참여	전방참여	후방참여
TPP	브루나이	95.7	4.3	42.7	0.3
	호주	85.9	14.1	29.5	6
	일본	85.3	14.6	32.8	12.5
	미국	85	15	24.9	11.9
	뉴질랜드	83.3	16.6	16.6	10.2
	칠레	79.8	20.2	31.7	12.3
	캐나다	76.5	23.4	19	18.5
	멕시코	68.3	31.7	15.1	30
	베트남	63.7	36.3	16	28.6
	말레이시아	59.4	40.6	19.8	33.2
EU	싱가포르	58.2	41.7	19.9	23.2
	체코	54.7	45.1	19.6	39.3
	슬로바키아	53.2	46.7	20.6	41.9
한국	한국	58.3	41.6	20.5	37.4

자료 OECD Tiva(2011년)

TPP에 따른 회원국별 GDP 및 수출 증대 효과(2030년 기준)



자료 Peter A. Petri and Michael G. Plummer, The Economic Effects of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New Estim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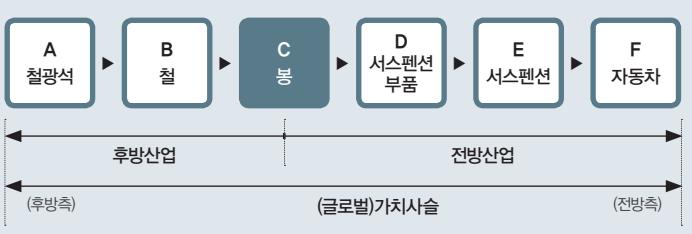
도는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높은 반면, 미국, 일본 등은 전방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방참여는 공산품의 경우 미국과 일본이 높고, 1차산품의 경우 브루나이, 호주, 칠레가 높아 이들 국가의 기초원료나 중간재를 이용한 역내 가치사슬이 확대될 전망이다. 후방참여도는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높은데 이들 국가의 생산능력을 활용한 TPP 선진국의 역내 가치사슬 구축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해 전방참여도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PP 발효 시 관세혜택은 제한적, GDP와 수출 증대 효과 예상

TPP 발효 시 관세철폐에 따른 무역 증대는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베트남, 멕시코,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TPP가 2017년 발효된다고 가정할 경우, 유관세 품목의 75%가 즉시 철폐되며 2030년까지 99%가 철폐될 예정이다. 그러나 TPP 역내 국가 대부분이 관세율이 높지 않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양자간 FTA가 발효 중이기 때문에 관세철폐에 따른 경제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TPP가 발효될 경우 2030년 TPP 회원국의 GDP가 TPP 미발효 시에 비해 0.5%~8.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GDP 증대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순이며 미국의 GDP 증대 효과는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TPP 회원국의 수출 효과는 베트남, 일본, 말레이시아 순으로 수출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방산업 vs 후방산업

현대 산업은 비교우위에 따른 분업이 일반화돼 있다. 하나의 제품이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생산자의 손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가치사슬이라고도 한다. 앞으로 가야 할 공정을 '전방산업'이라고 하고, 이미 거쳐 온 과정을 '후방산업'이라고 한다. 자동차의 앞쪽을 전방, 뒤쪽을 후방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분업이 국제적으로 이뤄지면 글로벌가치사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개별 국가의 발달 단계에 따라 인건비와 기술수준이 다르므로 각국은 그에 걸맞은 역할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TPP 발효가 비회원국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나 TPP 회원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태국 등은 대부분 무역 전환효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무역 전환효과라는 미국 시장에서 한·미 FTA에 따른 비교우위를 잡식당하는 효과 때문에 2030년 기준 TPP 미발효 시에 비해 GDP가 0.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글 이민선 관세사(FTA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사진 한국경제신문

한·중 FTA와 APTA 전격 비교①

FTA는 특례법, APTA는 관세법 적용

한·중 FTA가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APTA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APTA 역시 우리나라의 수출입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무역협정으로, 다양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두 번에 걸친 한·중 FTA와 APTA의 비교설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관세 혜택 활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APTA를 FTA의 하나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FTA와 APTA는 체약국 간의 관세철폐 또는 양허를 통한 무역증진을 목표로 하는 국제협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하다. 하지만 FTA가 체결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과 같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 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특혜무역협정인 반

면, APTA는 개도국 간 교역증대를 위해 상호 양허한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인하 혜택을 부여하는 협의의 무역협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FTA는 FTA 특례법에 규정된 바에 의해 적용되며 APTA는 관세법에 의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중 FTA 이전 중국과의 수입에서 중요한 역할

APTA(Asia-Pacific Trade Agreement: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는 최혜국대우(MFN)의 원칙이 지배하는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아래에서 회원국 간에 공공연히 특혜무역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회원국 간의 무역에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보다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교역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협정의 주요 내용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APTA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어 관세뿐만 아니라 무역원활화, 투자, 서비스 등 비관세분야로 협상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APTA 회원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몽골 등 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중 FTA와 별개로 한국과 중국은 APTA에 속한 국가로 한·중 FTA 발효 이전 APTA를 적용한 수입실적의 99%가 중국과의 무역이었다. 따라서 APTA는 사전 한·중 FTA 성격의 협정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한·중 FTA 발효 이후 전체 특혜관세에 서의 APTA의 점유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새로 개정된 APTA 협정에서 중국과의 관세양허품목 확대

APTA는 FTA와 달리 전체 품목에 대해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APTA 회원국 간에 합의된 한정된 품목에 한해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다시 말해, APTA는 HS 10단위 기준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평균관세 특혜폭이 대략 39%정도로, 농수산물 등 민감 품목 이외 전체 품목에 대해 관세의 완전 철폐를 목표로 하는 FTA와는 성격이 다르다. 또한 APTA에서 최빈국인 방글라데시와 라오스의 일부 수입품목에 대하여만 관세 특혜 폭을 추가 양허하는 것도 FTA에서 FTA 특혜관세를 모든 역내국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에 협상 타결되어 개정된 APTA 협정이 올해 발효되게 되면 추가적인 관세감축이 이루어지고, 중국과의 관세 양허품목이 2,191개로 확대되므로 이미 발효되어 이행중인 한·중 FTA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PTA 원산지결정기준에 세번변경기준 도입

APTA도 FTA와 같이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입 품목이 APTA 양허표상 특혜품목에 해당하고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된 제품어야 한다. 다만 원산지결정기준에서는 FTA에 비해 단순성을 보인다. 향후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도입될 예정이지만 현재 APTA에서 적용하고 있는 원산지규정은 모든 양허 대상 품목에 대해 완전생산기준(A), 부가가치기준으로서 비원산지재료가 총 본선인도가격의 55%(단, 방글라데시, 라오스는 65%) 이하(B), 그리고 회원국의 부가가치가 45%에 미달되어 원산지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를 보완하기 위하여 역내누적 부가가치율이 60% 이상(단, 방글라데시, 라오스는 50%이상)을 차지하여야 하는 역내누적부가가치기준(C)을 두고 있다.

APTA의 원산지결정기준(B)

비원산지 원료, 부품, 제품의 가치 + 원산지 미상의 원료, 부품, 제품의 가치
 $\times 100 \leq 55\%$
FOB(본선인도가격)

FTA와 비교해 보면 APTA에서는 최빈개발도상국인 방글라데시와 라오스에 대해 원산지 결정기준을 완화시켜주고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하여 특혜폭을 늘려주고 있으나, 원산지 판정에 있어 완전생산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두 가지만을 채택하고 있어 FTA에 도입되어 있는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 조합기준 등 다양한 원산지결정기준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최근 타결된 APTA 제4라운드 협상에서는 철강, 금속제품, 플라스틱 및 합성고무 등 HS 6단위 기준 659개 품목에 대해 기존에 적용되어온 부가가치기준 이외에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적용에 합의하여 원산지증명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FTA와 마찬가지로 APTA에서도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수출국의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APTA에서도 지리적 또는 운송 상의 이유로 비협정국에서의 단순 경유가 가능한데, 이러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유국에서 교역이나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역 후 재선적이거나 그 밖에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 외의 어떠한 작업도 행하여지지 않아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B/L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B/L상에 출항지가 협정국이고 도착지가 한국이면 타국을 경유하지 않은 직접운송으로 본다. 다만, 한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 APTA를 적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으로 B/L 또는 AWB가 수출국인 중국에서 발행되지 않고 경유지인 홍콩에서 발행된 경우에는 직접운송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침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APTA에서도 FTA와 같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사전확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APTA의 확인기관은 주소지 관할 본부 및 직할세관으로 FTA의 관세평가분류원과는 차이가 있다.❶

글 안은숙(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센터 과장)
사진 한국경제신문

FTA 현장의 목소리

한·중 FTA 발효 이후 많은 관심에 비해 준비 부족해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 이후 두 달째인 2월 19일 기준으로 전국상공회의소가 발급한 한·중 FTA원산지증명서는 약 7,00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업체들의 문의가 실제 원산지증명서 발급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다. 하지만 FTA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 없이는 관세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현명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하다.

2015년 12월 21일, 한·중 FTA 발효 후 첫 영업일 오전 9시.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콜센터의 전화기는 영업개시 직후부터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발효 직전 일평균 4~500건이던 전화문의 건수가 발효 직후 일평균 6~700건으로 폭증했다. 이처럼 기업들의 한·중 FTA에 대한 관심은 발효 직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업체들의 주요 문의내용은 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방법 및 절차 ◇관세특혜 혜택의 중복수혜 가능성여부 ◇HS 코드 상이 관련 처리지침 등이었다.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바로 FTA원산지증명서다. 해당 서류가 상대국 세관에 제출되지 않으면, 어

떤 업체도 FTA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때문에 대부분의 수입국 바이어들은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에게 해당 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수출업체들은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사전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발급 이후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

많은 업체들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수출신고 절차만밟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수출신고 전 단계에 있다. 바로 해당업체 수출물품의 정확한 세번부호(HS 코드) 파악이다. FTA의 경우 협정별, 품목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르고, 나아가 각 물품별 협정세율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해당 수출물품이 협정상 혜택이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혜택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들을 구비하여 원산지증명서 신청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중국의 경우 각 성(省)별로 물품의 HS 코드 분류체계가 다른 경우가 많아 향후 국내기준의 HS 코드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경우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해당 수출물품의 정확한 국내 HS 코드 파악을 위해 '관세평가분류원'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물품의 세번부호 파악이 완료된 이후 수출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수출신고가 완료된 전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기 전, 각 원산지결정기준별 구비서류를 사전에 파악하고, 해당 서류들을 충분히 준비한 뒤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서류 발급 이후가 더 중요해

관련 근거서류를 준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중요된 것이 아니다. FTA의 경우 협정상 '원산지 검증'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업체들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한 원산지 입증서류들 이상의 다양한 서류들을 협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반드시 보관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실제로 원산지 검증으로 인해 관세특혜 혜택을 배제당하거나, 상대국 수입업자로부터 거래중지 통보를 받는 사례들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한·중 FTA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3년을 보존년한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산지검증과 관련한 발급자의 의무는 FTA 법령에서 정한 세관과 상공회의소 등의 기관발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출자가 직접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시에도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수출업체들은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관세특혜의 중복수혜는 불가

중국 수출의 경우 그동안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한·중 FTA 발효 이후 두 가지 협정과 관련한 문의가 상당히 많았다. APTA와 한·중 FTA는 해당 품목별, 연차별 관세특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동일 수출 건에 대해 APTA와 한·중 FTA의 관세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AP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은 이후에 한·중 FTA의 관세 혜택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급 받은 APTA 원산지증명

서를 반드시 취하해야 한다. 그러나 총 수출물량 중 일부에 대해 APTA 원산지증명서를, 잔여물량에 대해 FTA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상대국의 정확한 HS 코드 반드시 파악해야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인 HS 코드는 한국과 중국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다. 중국 현지에서 우리 수출품의 HS 코드 앞 6자리를 우리나라 기준과 다른 번호로 요청하는 경우, 현지 세관이 공식적으로 발행한 서류(수입신고필증, 품목분류확인서 등)를 제출하면 수입국(중국) 기준 HS 코드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대국 바이어의 요청사항에 따라 무조건 HS 코드를 변경하지 말고 '중국 품목분류 사례집(관세평가분류원 발간)' 등 전문기관을 통해 상대국에서 요청한 내용이 맞는지 한번쯤 확인해 본 뒤 진행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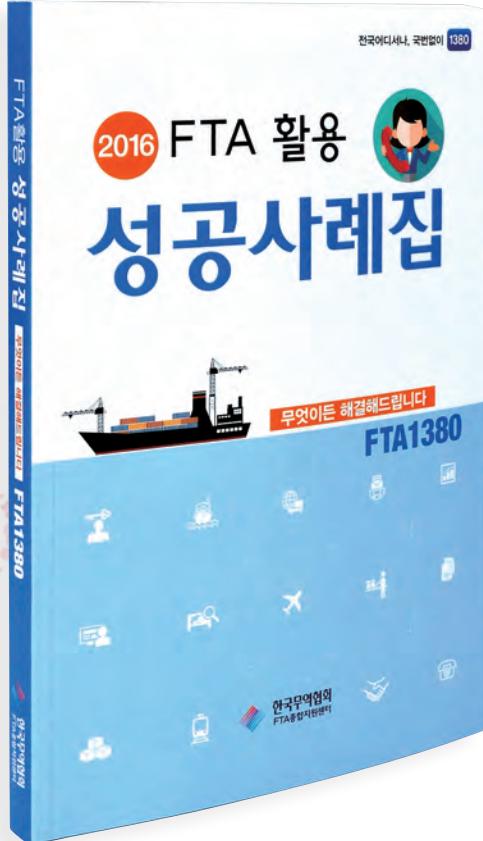
관세특혜 혜택의 진정한 수혜자는 바로 수출자

업체들은 수출자가 관세특혜 혜택을 직접 받지 못하기 때문에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입자가 관세특혜를 받게 됨으로써 향후 계약 건에 대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비록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국가에 동일한 물품을 수출하는 A와 B라는 수출자가 있을 때, 수입국 바이어는 FTA원산지증명서를 잘 알고 즉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준비된 수출자를 선호할 것이라는 건 당연한 예측이다. 대한상공회의소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다양한 기관에서 한·중FTA와 관련한 세미나와 교육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세미나와 교육을 충분히 활용하여 업체 스스로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❷



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FTA 콜센터 1380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콜센터(02-6050-3303) 등에서 원산지증명서발급 등 FTA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상담해주고 있다.

글 이현주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2016 FTA 활용 성공사례집 발간

FTA 활용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30개 기업의 우수사례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다양한 FTA 활용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30건의 중소·중견 기업 FTA 성공사례를 간추린 '2016 FTA 활용 성공사례집'을 발간했다. 책자에 수록된 성공사례들은 단순 원산지증명서 발급 외에도 한·미, 한·유럽(EU) FTA 등 다년차 FTA의 사후검증, 바이어대상 FTA 마케팅, 원산지관리시스템 도입, 각종 지원정책 소개 등 다양한 FTA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16 FTA 활용 성공사례집'은 FTA를 활용해 본 경험이 없는 초보기업이라도 FTA관련 용어, 품목별 원산지판정 절차,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사후검증 대비 등 전반적인 FTA 활용절차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책자에 소개된 사례들은 2015년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출품작 중에서 엄선함으로써 기업의 생생한 현장을 담아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책자를 희망하는 기업 및 단체는 FTA콜센터(국번없이 1380)로 신청하거나 무협 전자도서관(ebook.kita.net) 및 FTA센터 홈페이지(www.fta1380.or.kr)에서 열람 가능하다.

◀ 눈여겨 볼만한 FTA 활용 성공 사례 ▶

이번 FTA 활용 성공사례집에는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규정, 복잡한 증명서 발급절차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FTA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찾은 30개 중소·중견 기업의 우수사례가 담겨 있다.

사례1 흑마늘 제품 생산하는 B사

"FTA 활용해 신시장 개척하고 지역경제도 돋고"

한국은 1차 산업인 농수축산물의 자체 수출 경쟁력이 부족한 가운데 시장개방으로 인해 외국산 농수축산물을 이 수입될 경우 국내 농수축산업이 고사한다는 이유로 FAT가 추진될 때마다 관련 종사자들이 강하게 반대한다. 하지만 FTA를 활용하면 농축산물 산업도 충분히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지역별로 특화된 1차 농산물 가공식품을 개발, 고부가가치 식품을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K푸드'로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FTA를 활용해 가격 경쟁력도 확보한 기업들은 이미 수출 시장 확대 효과를 보고 있다. B사는 남해산 생마늘만을 100% 이용해 특허를 획득한 자체적인 훈증방식으로 흑마늘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건설업을 하던 설립자는 일본 출장에서 흑마늘의 사업성을 발견했다. 흑마늘의 종주국은 일본인데 일반인이 구매하기에 매우 비싸다는 점을 감안해 알 모양을 살릴 수 있는 자체 제품을 개발해 일본 흑마늘의 절반가격으로 수출하는 방안을 생각하게 되었다. A사는 첫 수출국가 일본의 까다로운 요구에 대응하며 이를 통해 자신감을 가졌다. 하지만 이들은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 과정에서 FTA 활용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실감한 후 FTA 교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세관, 중소기업청 등을 직접 찾아가 교육 과정을 수료했다.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B사는 FTA에 도전한 지 1년 만에 값진 성과를 올렸다. FTA 활용 이전인 2014년 16만 달러였던 수출액은 2015년 29만 달러로 1.8배 늘었는데, 같은 기간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액은 4.7배 증가했다. B사는 FTA 활용 성공 요인으로 CEO의 FTA 활용의지, 세관·중소기업청 등 정부의 적극적인 교육·상담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지속적인 원재료인 마늘 공급선 확보 등을 꼽았다.

사례2 울산의 자동차부품회사 C사

"사후검증 공포, 협력사와 공조로 해결"

통고처분이란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행정범을 범한 심증이 확실한 때에 그에 대한 벌금·과료·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C사는 한·EU FTA 발효 이후 각 품목의 인증유효기간에 맞는 원산지증명서를 자체적으로 발급해 슬로바키아 세관에 제출, 검증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품목별인증 품목이 아닌(HS코드가 다른) 품목이 일부 포함됐다는 사실을 파악한 슬로바키아 세관이 사후검증 결과를 한국 세관에 연락한 것이다. 한·EU FTA에서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게 해당 수입건에 대한 원산지 진위여부를 위탁해 수출국 세관이 주체가 되어 검증을 수행하는 간접검증방식을 택하고 있다(수입국 세관 참관 가능). 직접검증으로 규정되어 있는 협정보다 검증 당국과의 의사소통 등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고의적이 아니었다는 점이 인정돼 문제가 확대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C사는 그때를 떠올리며 FTA는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자 위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고 체계적인 FTA 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울산광역시 북구 흐자로에 소재한 C사는 한국 자동차부품산업의 살아있는 역사를 불리며 현재 자동차용 소음기와 컨버터 등 배기시스템 분야에서 국내시장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사건으로 곤욕을 치룬 C사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보다는 자체적으로 모든 협정과 모든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주력했다. 이후 C사는 EU의 간접검증 4회, 미국의 직접검증 4회 등 총 8회에 걸쳐 원산지 사후 검증을 받았는데 종합적인 대응을 통해 거의 모든 사례에 걸쳐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았다. 그동안 익힌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협력사들과 손잡고 적극 대처한 결과였다. ☺

글 김선녀 기자
사진 이승재 기자

클레어 편리(H.E. Clare Fearnley) 주한 뉴질랜드 대사

“한·뉴질랜드 FTA는 양국 유대관계와 협력분야를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지난해 12월 발효된 한·뉴질랜드 FTA는 우리나라의 14번째 FTA다. 뉴질랜드는 여행과 학업, 이민 등을 통해 우리와는 이미 친숙한 나라다. 클레어 편리 주한 뉴질랜드 대사는 이번 FTA가 오래 전부터 다져온 양국 간의 튼튼한 유대관계 위에, 무역 및 경제 협력과 활발한 인적자원 교류라는 새로운 기회를 통해 두 나라의 상생을 강화시킬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나요? 한국에 서의 생활은 어떠신가요?

일 년 정도 됐습니다. 요즘 한국어는 물론 역사와 음식 등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일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에 머물러야 하지만 시간이 나면 한국의 다른 지역들도 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부산, 대전, 통영, 광주, 전주, 평창, 속초, 제주 등을 다녀왔는데, 그때마다 한국인들 역시 뉴질랜드 사람들처럼 따뜻하고 정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내 한국인은 전체 인구의 약 1퍼센트로 인구 대비 한국인 거주자가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하죠. 4만 명에 가까운 한국인 커뮤니티는 정치인부터 기업인, 스포츠 스타에 이르기까지 사회 모든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하며 양국 간 이해와 견고한 유대관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클레어 편리(H.E. Clare Fearnley)
주한 뉴질랜드 대사

- 1996~1998년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북아시아국 수석정책관
- 1998~2002년 주상하이 뉴질랜드총영사
- 2002~2004년 뉴질랜드 외교통상부통상교섭국 부국장
- 2004~2007년 주타이페이 뉴질랜드 상공사무소장 겸 대표
- 2007~2011년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통상법수석자문관 겸 통상법실 실장
- 2011년 뉴질랜드 외교통상부법률국 국장대리
- 2011~2014년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아시아태평양지역국 국장 겸 EAS/ARF/APEC 수석
- 2014년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북아시아국 국장
- 2015년 주한 뉴질랜드 대사(현)

지난해 12월 발효된 한·뉴질랜드 FT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나라의 이익균형이 잘 이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학자들은 두 나라 간의 포괄적인 FTA가 시행될 경우 2030년경 한국과 뉴질랜드에 각각 미화 60억 달러와 45억 달러의 경제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높은 소비자 구매력과 적당한 시장규모를 가진 뉴질랜드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로 스마트하면서 참여적인 서구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는 한국 중소기업들이 관리하기 쉬운 시장으로, 세계로 수출을 원하는 한국 중소기업들에게 이상적인 시험대이자 발판이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FTA는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인적자원 교류도 더욱 용이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기존의 워킹홀리데이 참가 인원을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고, 방학기간을 활용해 농어촌 지역 한국 청소년들에게 뉴질랜드 내 교육기관에서 영어 수업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숙련인력들이 영구거주 의도 없이 고용계약에 근거해 일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시고용입국과 농축수산업훈련비자를 확보해 한국의 전문인력과 훈련생들의 뉴질랜드 내에서의 연수 기회도 확대됩니다.

현재 한국과 뉴질랜드 간에 잘 진행되고 있는 협력 프로그램에는 무엇이 있나요?

뉴질랜드 혹은 한국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통합적인 상업관계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뉴질랜드 제스프리사와 제주도 농가의 협력입니다. 제스프리사는 서귀포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품

높은 소비자 구매력과 적당한 시장규모를 가진 뉴질랜드는 세계로 수출을 원하는 한국 중소기업에게 이상적인 시험대이자 발판이 될 것입니다

“

”

앞으로 한·뉴질랜드 FTA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선돼야 할 부분도 있을까요?

양국 간 FTA가 발효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지금은 FTA가 잘 시행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FTA를 위해 앞으로 여러 위원회가 만들어져 양국 기관들이 더욱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만남을 이어갈 것입니다. 양자 간 FTA 외에도 뉴질랜드와 한국은 모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하고 있고, 뉴질랜드가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으며 올해 2월 뉴질랜드에서 서명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한국 또한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나라 모두 APEC 회원국으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수립 가능성과 함께 앞으로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FTA와 관련해 한국인과 기업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한·뉴질랜드 FTA가 발효돼 다양한 분야에서 관세 인하 등의 혜택이 시행되면서 지금은 한국 소비자들과 수출 기업들이 기업친화적이고, 고품질의 안전한 제품을 자랑하는 뉴질랜드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할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과 뉴질랜드 기업들이 보다 많은 기회를 통해 무역과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서로의 유대감과 이해도를 높이고 파트너십을 강화해 새로운 기회들을 포착할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FTA를 통해 두 나라 간의 새로운 협력 기회가 더욱 많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

글 우종국 기자
사진 서범세 기자

2015 FTA 활용 경진대회 수상기업 탐방: (주)이제이피코리아(최우수상)

정성을 담은 기술로 인정받은 기계 산업, FTA를 통해 세계로 뻗어갑니다

기계 부품의 후처리 공정에 필요한 기계를 설계·제작하는 이제이피는 독일산에 의존했던 우리나라의 산업기계를 한국산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발 빠른 FTA 활용을 통해 기술을 전수받았던 독일로 제품을 역수출을 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세계적으로 기계 산업은 독일과 일본에서 발달했다. 우리나라 역시 불과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철강회사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계는 독일산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독일이 자본을 투자하고, 우리가 만든 제품을 독일로 수출하는 기업이 있다. 기계 산업에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둘러 보여주고 있는 이제이피는 현재 국내 철강회사의 기계를 '메이드인 코리아' 제품으로 채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

흔을 담은 기술력으로 인정받다
울산 울주군에 자리한 이제이피는 자동차 및 조선과 관련한 다양한 기계, 부품 공장들이 독특한 풍경을 만들고 있는 산업단지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높은 천장의 컨테이너 건물이 압도하는 공장의 외관과 달리 사무실 안은 잘 정리된 도서관에 들어온 듯 차분하고 조용했다.

이제이피의 전체 직원 수는 26명이다. 공장 규모에 비하면 적은 수 같아 보이지만 이중 8



적은 인원이지만 각자의 분야에서 정성을 다해 제품을 만드는 자체가 바로 이제이피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이다.

1



1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이제이피 공장

2



2 독일 수출을 위해 FTA에 관련한 모든 자료들을 꼼꼼하게 관리한다.



3 이제이피는 기계 설계는 물론 설비 제작까지 담당하고 있다.

명이 엔지니어, 나머지 인원은 제작과 사무직 등 자신의 분야를 완벽하게 책임지는 정예요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이피는 독일과의 합작투자법인회사로 엔지니어링은 물론 제작까지 가능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설비회사이다. 주로 협력과정에서 후처리 공정에 필요한 기계인 인발기, 필링머신, 교정기, 압연기, 면취기 등을 만든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기계부품을 만들기 위한 금속의 1차 가공에 사용된다. 주요 고객사로는 현대제철, 동부특수강, 풍산, 세아베스틸, 고려제강, 진양스틸 등이 있다.

최녹영 대표는 포스코 다음으로 큰 회사였던 삼미종합특수강이라는 철강회사에 10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철강회사에서 사용하는 필링, 면취, 인발기 등의 기계는 대부분 독일에서 수입해 가격도 비싸고, 납기도 늦는 것이 다반사였다. 1994년 회사를 설립한 대표는 처음엔 독일의 기술력에 의존했지만 2002년 교정기를 개발하면서 매년 차근차근 설비기계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나갔고 투자를 교정기를 포함해 면취기, 챔퍼링머신 등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공급했다. 모든 기계를 독일산에 의존했던 그때와 달리 지금은 국내 굴지의 철강 회사 80% 이상이

국내산을 사용한다. 이제는 한국산도 외국산에 뒤지지 않는 품질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해외제품과 비교해 가격경쟁력까지 갖춘 데다 수입산에 비해 납기일까지 빨라 내수 시장에서도 독일산에 뒤지지 않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

한발 앞서 준비해 더욱 커진 FTA 효과

내수시장에서 이제이피의 제품이 인정받으면서 역으로 해외에서 이들의 제품을 찾는 수요도 많아졌다. 특히 독일의 이제이피사에서 일손이 모자라 제작이 어려운 물량을 제작해 수출하기도 하는데 현재 이제이피의 제품은 독일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해 해외 시장에서도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이제이피 사무실의 한쪽 벽면에는 FTA 관련 자료들이 서랍 곳곳에 빼곡히 채워져 있다. 한국과 EU가 FTA를 맺기도 전인 2010년부터 FTA 컨설팅을 받기 시작했을 만큼 FTA 활용에 열정적이었던 이들의 노력이 한눈에 드러나는 자료들이다. 이제이피의 수출품목인 기계류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원자재 명세서(BOM) 구성이 매우 복잡해 전략적 원재료 관리가 필수적이었다. 이에 이제이피는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를 위해 부가가치기준보다는 세번변경기준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것

에 주력했다. 또 기존에 받았던 품목별 인증은 인증 받은 HS와 수입국 HS가 다를 경우 FTA 특혜 세율 배제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될 수 있어 품목별 인증을 업체별 인증으로 전환해 HS 오류로 인한 사후 검증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현재 이제이피의 수출 비율은 30~50퍼센트로, 중국에도 중국, 독일과 합작투자한 공장을 설립하기도 했다.

수출 시장은 활발해졌지만 최녹영 대표는 휴대폰, 자동차, 조선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 분야에 비해 여전히 어려운 일반기계산업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부품산업의 수준이 외국에 비해 높지 않고, 외국 제품을 선호하는 풍조가 남아 수요가 따라주지 않는 점이 계속되는 문제로 남아있다"며 국내 기업에 대한 신뢰와 함께 중소업체들을 육성하기 위한 의식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흔을 담은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경영서에서 늘 언급되는 '흔(魂)'이라는 말을 국내 제조업 현장에서 듣게 되니 감회가 새로웠다. 사무실에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는 FTA 매뉴얼과 자료들이 순간 떠올랐다. 생각이 잘 정돈되면 그것이 제품에 나타난다. 이제이피 제품의 수준을 짐작할 만했다.❷



한·이스라엘 FTA의 추진과 의의

이스라엘과의 FTA, 상호보완적인 '긴밀한' 협력 될 수 있어

지난 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이스라엘 FTA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개최했다. 2015년 12월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를 연달아 발효시키고 채 한숨 돌리기도 전에 새로운 FTA의 추진인 데다가 상대가 다소 생소한 이스라엘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제경제 및 통상적 관점에서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건국한 나라이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이슬람교가 탄생한, 그야말로 성지(聖地)인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이스라엘은 아시아 서남부에 위치한 중동국가다. 수도를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과의 분쟁 등으로 여전히 나라 곳곳에 상흔(傷痕)이 가득하지만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나라다. 국제통화기금(IMF, 2015)의

2015년 통계에 따르면 명목기준 GDP 세계 37위, 1인당 기준 GDP 24위를 기록했다. 명목기준으로는 덴마크(38위), 싱가포르(39위), 핀란드(41위) 등을 앞섰고, 1인당 기준에서도 일본(25위)과 이탈리아(27위)보다 위에 자리 잡았다.

이스라엘은 국제통상적 관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국가다. 세계통상체제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도 1962년 7월 5일 서명, 참여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중동국가로 도시 내에서 여전히 종교 등의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경제적, 국제통상적 관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국가다.

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에도 1995년 1월 승인, 같은 해 4월 21일 정식 가입한 창립 멤버다. 이처럼 다자간 무역체제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FTA에도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은 경제적 의의에 더해 특유의 정치외교적, 군사적 중요성에 힘입어 1985년 미국과 최초로 FTA를 체결한 이래 유럽연합(EU),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 40여 개국과의 협정을 체결했다.

FTA체결이 불가피하게 초래하는 민감품목 및 주력산업에 대한 경쟁과 피해, 이로 인한 사회적 피로와 갈등에 대해 비교적 자유로운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이미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어, FTA로 인한 추가적이고 공격적인 시장개방으로부터 자국 산업에의 영향이 크지 않고 오히려 수입장벽이 낮아져 국민들의 후생과 가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농산물을 수출하는 기회가 제공되는 측면도 있다.

먼 길을 돌고 돌아 온 한·이스라엘 FTA

WTO로 대변되는 다자체제를 역설하던 한국은 그 한계를 실감하고 2000년대 들어서며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FTA 후발주자에 가까웠던 한국은 첫 FTA 상대국에 대한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때 칠레와 더불어 먼저 우리에게 FTA 협상을 제안했던 국가 중 하나가 이스라엘이다.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동아시아 시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교두보로 한국을 선택했다. 대통령까지 한국을 방문하여 FTA 협상에 대한 의사를 표명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행보는 적극적이었다.

두 국가는 주력 산업이 겹치는 것도 아니었지만, 석유 및 가스 등의 에너지 교역 관계, 건설 분야 협력 등에 대해 복잡하게 얹혀있는 다른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를 간파할 수 없었던 한국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결국 첫 FTA 상대국은 칠레로 정해졌다. 유제품이나 미용제품 등의 유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근근이 이어져오던 양국 교역관계는 올해 수교 54주년을 맞아, 지난 2000년대 초반 이후 근 20년 만에 FTA 재추진이라는 큰 동력을 얻게 됐다.

기대와 부담의 공존, 시사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경상북도 정도의 면적을 가진 작은 국가지만 여러 악재 속에서도 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R&D 투자, 까다로운 유럽에서도 인정받는 풀륭한 상품성 등을 가지고 있으며 지식 산업이 크게 발달돼 있고, 무인항공기 및 정보 보안 등 방산업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에겐 포도나 주스 및 비료와 농업기술 위주로 수출하고 있어, 우리 농업에 대한 피해가 다른 FTA에 비하면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우리의 대이스라엘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가 매년 9%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 및 지식산업 분야는 창조경제를 지향하는 우리와의 협력 및 상생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교역규모는 크지 않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동차 및 전자제품 등 우리의 주력상품을 완성품의 형태로 수출하는 동시에 우리 농산물의 신(新)수출시장으로 목표 삼고, 이스라엘로부터는 반도체 관련 제품 등의 중간재를 수입하면서 그들의 농식품 무역정책을 일부 벤치마킹해 우리 농식품 소비기반을 확대하고, 농업의 체질 개선도 유도해 볼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한·이스라엘 FTA의 기대효과는 우리 GDP 0.007~0.061% 상승, 소비자후생 8천300만 ~7억2,000만 달러 상승 정도이지만 비관세 감축 및 협력 측면에서의 예상이익은 앞선 수치를 훨씬 상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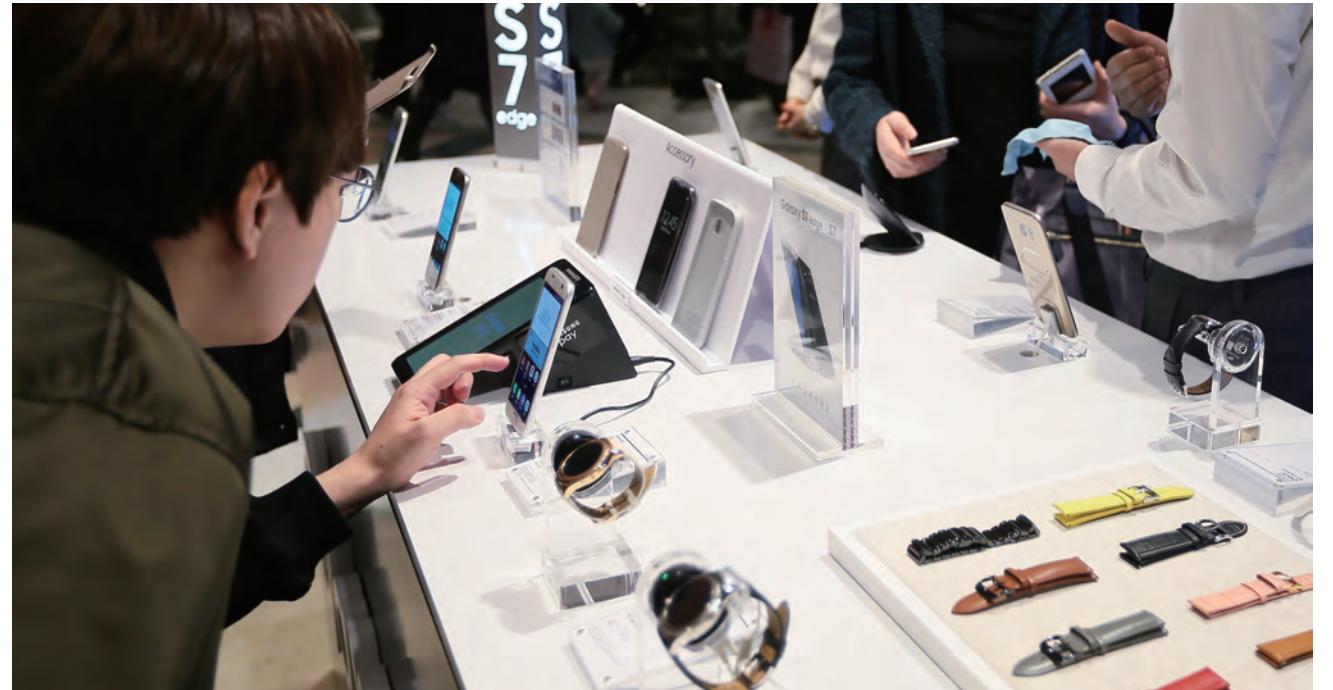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2014년 정부 통상부처의 과부하로 인해 이스라엘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바 있고, 지금도 여전한 상태다. 여기에 주요 아랍 국가들의 집합체인 걸프협력회의(GCC)와 FTA 협상이 2009년 중단된 이후 지지부진한 것도 이스라엘과의 FTA를 선추진하는 데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 사이 파나마는 작년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이스라엘과의 FTA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미국, EU 등 이스라엘과 FTA를 앞서 체결한 국가들과의 사례를 검토하되 그들과는 상이한 우리 자체의 청사진 그리기에 충실히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이스라엘의 관심이 짹사랑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글 이민선 관세사(FTA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사진 한국경제신문

스마트 기기가 생활화된 요즘에는 새로운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기기들이 출시될 때마다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다.
사진은 삼성 갤럭시 S7, S7엣지 체험관을 찾은 시민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실전 품목분류: ⑩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스마트워치는 시계? 스마트폰과 같은 8517호!

최근 직장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 의존도를 조사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스마트 기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스마트 기기는 우리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제적 이슈 품목인 스마트 기기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상 여러 HS 코드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폰을 시작으로 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등 기능을 확장한 스마트 기기가 계속 출시되는 가운데 여전히 기능이 덧붙여진 복합 다기능 기기는 관세율표상 주기능에 따라 분류하거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느 부분이 주기능이고 어느 부분이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부분이라고 명확하게 결정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가장 대표적인 스마트 기기인 스마트폰과 최근 많은 관심과 함께 주요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스마트워치를 중심으로 품목분류를 살펴보자.

스마트폰은 복합 다기능 기기에 해당

스마트폰은 PC와 같은 기능과 함께 고급 기능을 제공하는 휴대전화이다. 다시 말해 스마트폰은 전화 기능이 있는 소형 컴퓨터라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은 PC와 유사한 운영체계를 탑재하여 기존 음성, 영상 통신서비스를 비롯해 셀룰러 통신망 또는 Wi-Fi망과 연결하여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무선인터넷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자의 취향대로 쉽게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고, 디지털 카메라 수준의 고화질 카메라, 동영상 촬영 및 재생, 내비게이션, 게임, 모바일 결제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제공하

고 있다.

현재 휴대전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마트폰은 PC에 버금가는 고성능, 대화면, 고화질의 스마트폰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단순한 통신기를 넘어 정보기기에서 생활기기와의 디지털 허브로 점점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HS 품목분류상 전화, MP3 및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재생, 무선 이메일 및 무선 인터넷, TV, 카메라, 내비게이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 다기능 기기에 해당하고 주기능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된다.

과거 스마트폰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독일에서 HS 국제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다. 독일은 DMB폰을 TV로 분류해 HS 8528호, GPS폰은 8526호에 분류하여 관세를 부과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능 중 판매형태, 크기, 주용도, 구조 등을 감안할 때 주된 기능은 무선 휴대전화에 있으므로 전화기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는 EU 측에서 우리나라의 주장을 수용하여 스마트폰은 현재 관세율표상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가 분류되는 HS 8517.12호에 분류되고 있다.

스마트워치 시계 아닌 무선통신기기로 분류

스마트폰의 고성능화 및 다양한 멀티기능 제공에 따라 다양한 센서 기술을 적용한 헬스케어 기능 등이 추가되고, 스마트폰은 이제 손목시계, 안경 등의 형태로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로 진화 중에 있다. 이중 스마트워치는 시계 기능에 전화, 문자 송수신, 이메일 확인과 같은 스마트폰 기능이 있는 기기이다. 스마트워치는 사용자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센서류를 내장하고 있어 걸음 수, 칼로리 소모량, 거리 등 운동량을 실시간 체크하고 저장할 수 있는 운동량 관리기능, 혈압과 맥박 수, 체온, 호흡수, 혈당, 혈압, 적혈구 수치계산 등의 건강추적 기능 등이 탑재되어 있다. 더 나아가 집안의 조명이나 에너지 사용, 온도, 방범, TV나 오디오와 같은 가전제품의 원격 제어 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손목시계처럼 작용하고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사용하는 스마트워치는 통신기기로 분류될까, 아니면 시계로 분류될까? 2015년 3월까지 스마트워치는 품목분류에 대한 명확한 국제 기준이 없어 각 국가별로 제각각 통신기기나 시계 중 하나로 임의 분류하여 관세를 부과해왔다. 이에 우리나라가 스마트워치를 품목분류상 통신기기로 확정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WCO(세계관세기구)에 제출하여 스마트워치의 주 기능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스마트워치를 시계로 봐야 한다는 국가 측에서는 외형과 품명을 중요한 분류기준으로 보고 통화, 문자 수신, 알람 등은 부수적 또는 선택적인 기능으로 판단하였다. 반면, 우리 정부는 스마트워치의 주기능이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전화통화를 할 수 있고, 문자 수신이나 GPS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통신기기에 부합한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시계기능에 대해서도 무브먼트(시간조정장치)를 통해 시간을 자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위성에서 시간 정보를 받아 단순히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수적인 모니터 기능이라는 의견이었다. 그 결과, 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우리 정부가 올린 안건을 채택하여 스마트워치를 시계가 아닌 무선 통신기기로 분류하기로 결정하여 HS 8517.62호에 분류되게 되었다. ☐

국내 기업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세계 최초 점자 스마트워치



글 손보인 변호사·변리사(법무법인 위민)

한·중 FTA와 지식재산권: ⑩ 중국 지식재산권 계약 – 전리권 Ⅱ

중국 전리권 양도 계약 체결 시,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중국 관련 법률 규정 고려해야

중국 전리권 양도 계약 체결 시, 그 내용 중에서도 특히 양수인이 받을 자료, 해당 전리권의 양도인 또는 제3자 실시허가에 관한 부분, 양도금의 지불 시기 및 방식, 전리권의 사후적 무효에 대한 처리, 전리권 절차에 관련된 과도기 규정, 준거법 및 분쟁 해결방법 등에 관한 항목에 유의해야 한다.

중국 전리권 양도 계약

중국 지식재산권 계약–전리권 I

1. 전리권 계약의 특징
2. 중국 전리권 계약관련 법규
3. 중국 계약법상 전리권 계약
4. 중국 전리권 양도 계약
 - 가. 특허권 양도 계약 전 수출인 가능 기술 여부 확인
 - 나. 계약 대상 전리권 및 당사자에 관하여

(2월호에 이어 계속됩니다)

다. 양수인이 받을 자료

양도받을 전리권의 신청·심사과정에서 국가지식재산권국(國家知識產權局)과 주고받은 서류 일체(예. 명세서, 의견진술서 또는 보정서, 심사의견통지서, 등록결정, 특허증서 등)를 넘겨줄 것을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약정하는 것이 좋다. 이는 양수할 전리권의 권리범위의 파악 및 향후 분쟁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추후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이다.

라. 양수받을 전리권에 관한 실시허가 부분

특허권자가 제3자와 실시허가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는데,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상 특허권 양도 계약의 성립은 이전에 제3자와 체결한 특허 실시허가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당 실시허가 계약의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양도 계약 이전에 제3자와 체결한 실시허가 계약의 여부 및 그 내용에 관한 자료를 양도인으로부터 미리 받아 이를 파악하여 이전될 권리·의무의 내용을 알아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해당 실시허가계약을 양 당사자 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규정할 수 있다.



한편, 양도인이 전리권 양도 이후에도 해당 기술을 계속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에 따르면,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리권 양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양수인이 해당 기술의 실시 중지를 요구하면 법원이 이를 중지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전리권 양도인이고 해당 기술을 계속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기술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약정해야 한다.

마. 양도금의 지불에 관하여

양도금의 지불에 관한 지급 시기 및 방식은 양도 계약의 다른 규정 즉, 자료 교부 시기, 계약 효력 발생 시기, 전리권 이전 효력 발생 시기, 제3자 실시허가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중국 계약법 제44조에 의하면, 계약은 그 성립 시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동법 제45조에 따르면 상방 당사자는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을 부가하는 약정을 추가할 수 있다. 또한 기술수출입관리조례에 따라, 전리권이 수출입 제한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효력은 중국 상무부로부터 허가증이 발부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양도 계약서에 “계약효력의 발생일로부터 10일 내에 양도금을 지급한다”라고 약정한 경우라도, “계약 효력의 발생일”은 해당 기술의

수출입제한기술 여부, 계약의 다른 효력 발생 요건에 따라 해당 발생일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양국 간의 양도금의 지불은 외환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각 국가별 외환거래 규제에 따른 필요성 및 절차를 미리 파악하여 계약에 반영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바. 전리권 사후적 무효에 관하여

양도계약 이후 전리권이 사후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양수인 입장에선 양도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일기 쉽다. 그러나 중국 전리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전리권 양도 계약 체결 이후에 전리권이 무효가 되더라도 양도 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양도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동조 제3항에서 양도금의 반환이 공평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계약 전체 내용에 따라 양도금 반환이 가능할 수 있다.

사. 계약 성립 이후 과도기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이후, 전리권 변경 등기의 공고일까지 대략 수개월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과도기에 전리권 무효 심판이 청구되거나 연차료 미납에 따라 전리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과도기동안의 전리권 유효 유지 의무와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

아. 준거법 및 분쟁 해결 방법

계약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도 있으나, 해석의 이견과 계약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더욱 일반적이다. 계약의 해석에서 차이가 발생하거나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 해석의 준거법을 어떻게 할 것이며, 분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미리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무적으로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 반대급부보다 훨씬 커서 분쟁 해결을 애초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준거법은 계약의 해석에 적용되는 법률을 의미하는데, 중



중국 전리권 양도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중국 관련 법률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국 섭외민사관계법률 적용법 제41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협의로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동법 제48조는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내용은 보호가 청구된 지역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실무적으로는 중국 법률이 강제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정하더라도 그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보통 분쟁 해결은 법원이나 중재기구를 통하여 해결하는데,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에서는 관할 법원을 어디로 할 것인지 를 정할 수 있다. 중국 민사소송법 제34조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는 서면의 방식으로 피고 주소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 주소지, 목적물의 소재지 그리고 분쟁이 실질적으로 연관된 지역의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위 지역의 법원 중에 하나를 약정하면 된다. 분쟁의 실질적 연관된 지역이 아닌 제3지역의 법원을 관할로의 합의는 무효가 될 것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중재를 통한 해결은 특정 국가의 법원을 통한 해결보다 신속하고 일회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점에서 유용할 수 있다. 계약에서 유효한 중재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무시하고 일방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중재기구는 스스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당사자 간의 중재 결과에 기초한 강제 집행을 해당 국가의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국가의 법원은 중재판정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한 후 이를 승인하여 집행하게 된다. 유효한 중재 합의가 되기 위해서는 중재를 행할 중재지, 중재기관 및 적용할 준거법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하는데, 중재 합의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고 최종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가 이뤄질 수 없으므로, 중재 합의에 관한 구체적인 문구를 작성함에 있어 유의해야 한다.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위치한 대한상사중재원을 지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계약의 내용에 중재 합의가 없더라도, 분쟁이 발생한 이후 사후적으로 중재 합의를 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중재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거의 없다.

글 유영진 관세사(FTA종합지원센터 FTA활용지원실)

실전 FTA 활용 노하우: 한·베트남 FTA 주요 내용 및 활용 방안②

한·아세안 FTA에 비해 유연성 높아져

한·베트남 FTA는 베트남이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다자무역협정 중 하나인 한·아세안 FTA와 연관 지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품목별 원산지기준, 최소허용기준, RVC 계산방법 채택 기준 등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한·베트남 FTA를 한·아세안 FTA와 비교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품목별 원산지기준 완화

한·아세안 FTA는 HS 코드 6단위 기준으로 5,205개 품목 중 545개 품목에 대해서만 개별기준을 부여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공통기준으로서 4단위 세변경기준 또는 역내부가가치비율 40% 이상(CTH or RVC40)을 정하는 형태였다. 또한, 아세안 회원국을 포함해 11개 국가의 산업특성 등을 반영하다보니 각각의 체약당사국에 특화된 원산지 기준 수립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한·베트남 FTA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5,205개 품목 중 417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기준을 변경하였는데, 362개 품목에 대해서는 이를 완화시키고, 31개 품목에 대해서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여기서 완화되었다는 의미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변경기준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기존 4단위 세변경기준이 6단위 세변경기준으로 변경되어 충족이 수월해졌으며 (CTH→CTSH), 하나의 기준만을 제시하는 단독기준 형태에서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선택기준 형태로 변경됨에 따라 판정 주체의 유연성을 부여하여 원산지기준 충족 가능성을 높였다. 원산지기준 강화는 대부분 농수산식품에서 이루어졌으며 완화와 반대로 4단위 세변경기준에서 2단위 세변경기준으로(CTH→CC) 바뀌었거나, 선택기준에서 단독기준으로 변경되어 원산지기준 충족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졌다.

2.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

최소허용기준이란 비원산지 재료가 해당 품목의 세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세변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치(또는 중량)가 제품의

FOB가격(또는 중량)의 일정비율 이하(일반적으로 10%)로 사용된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해준다는 특례기준이다.

한·아세안 FTA 하에서는 제50류~제63류(섬유 및 의류) 대해 세변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총 중량이 상품 중량의 10% 이하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하도록 중량기준만을 정하고 있었으나, 한·베트남 FTA에서는 세변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치가 FOB 10% 이하인 경우와 중량기준을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최소허용기준 적용에 유연성을 부여하였다.

〈한·베트남 FTA 협정문〉

제 3.9조 최소허용수준

1. 세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품은 다음의 경우에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세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 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세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그 상품의 총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요구되는 세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 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금액기준 상향

한·아세안 FTA 하에서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FOB 가격 기준으로 미화 200달러 이하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하였으나, 한·베트남 FTA 하에서는 그 기준을 미화 600달러로 상향하여, 비상업적인 규모의 수입건에 대한 특혜관세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사실 미화 200달러라는 기준은 타 협정에 비해 허용범위가 좁아 효율성이 떨어졌으나, 한·베트남 FTA 적용 시에는 금액기준 상향을 통해 효율성을 높였다. 이 밖의 원산지증명서(Form KV) 발급과 관련해서는 지난 호에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한·베트남 FTA 협정문〉

제 3.17조 원산지 증명서의 면제

당사국은 수입의 과세가격이 본선인도가격조건(FOB) 기준 미화 600달러 또는 수입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되지 아니함을 규정한다. 다만, 이는 그 수입이 이 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규율하는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거나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라고 수입 당사국이 간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RVC 계산방법 채택 기준

한·아세안 FTA 하에서도 역내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집적법(Build-up Method)과 공제법(Build-down Method)을 두고 체약당사국에서 하나의 방식을 채택하면 해당 국가에서 수출되는 물품의 원산지 판정시에는 채택한 방식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8월에 논의된 한·아세안 FTA 3차 개정의정서에서는 국가가 채택하여 일괄사용하는 방식에서 각 기업별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 이 개정의정서는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태이며, 한·베트남 FTA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채택하는 방식을 고수하였다.

“ 베트남은
한·베트남 FTA는 물론
한·아세안 FTA에도 참여하고 있어
두 FTA 주요 내용을
모두 숙지하는 것이 좋다 ”



〈한·베트남 FTA 협정문〉

제 3.3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아니하는 상품
1. 제3.1조제1항나호의 목적상, 부속서 3-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한 상품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조건을 만족할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2. 역내가치포함비율(이하 “RVC”라 한다)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 중 한가지이다.³⁾

가. 직접법/집적법

(후략)

3) 양 당사국은 역내가치포함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을 채택함에 있어서, 집적법 또는 공제법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다.

5. 기록보관

한·아세안 FTA에서는 원산지 증빙서류에 대한 기록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한·베트남 FTA 적용에 따른 원산지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⑥

〈한·베트남 FTA 협정문〉

제 3.18조 기록유지요건

- 검증 과정의 목적상,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수출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일부터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신청을 위한 증빙 기록을 보관한다.
-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과 관련된 기록을 보관한다.
- 원산지 증명서의 신청 및 그러한 신청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발급 당국에 의하여 발급일부터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된다.

글 유영웅 관세사(관세법인 네오)

FTA 사후 검증팁: 효과적인 한·미 FTA 사후검증 서류 작성법②

검증대상 품목에 대한 설명은 HS 코드의 정확한 분류가 관건

지난 호에서는 한·미 FTA 사후검증 서류인 소명자료 작성 방법 중 소명자료의 첫인상인 제조자와 수출자 소개 방법(오른쪽 목차에서 I. 수출자/제조자 소개)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에는 지난 호에 이어 검증대상 품목을 설명하는 부분에 대한 작성 요령에 대하여 살펴보자.

CBP Form 28(미국 세관에서 발행한 정보제공요청서)의 CBP officer 메시지에는 일반적으로 검증 품목에 대한 certification of origin, BOM, Cost data 등을 요구한다. 이는 물품에 대해 BOM(자체명세서) 등을 통하여 역내산임을 입증하라는 의미이다. 역내산임을 입증하기 위해선 정확한 품목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해당 HS코드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는 과정을 논리정연하게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챕터 II 부분에서는 ①물품에 대한 설명, ②HS코드 결정, ③HS코드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게 된다.

검증대상 품목에 대한 설명 (Request for Information, CBP Form 28.)

검증대상 품목에 대한 설명 부분으로 검증자료 요청서에서 요구된 품목에 대하여 작성하는 부분이며 HS코드가 정확하게 분류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 수출품목에 대한 사진, 용도, 기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품목분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HS 코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작성이 잘 되어야만 이어지는 'III.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부분을 완성할 수 있다.

1. CBP의 검증대상 품목 지정 방법

일반적으로 검증대상은 수입 건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된다. 수입신고번호를 기준으로 검증품목을 지정하므로 원산지검증이 시작된 경우 CBP Form 28 전체를 반드시 수입자로부터 수취하여 검증대상 품목이 무엇인지 파악하여야 한다.

Entry No.	Line No.	Importer of Record No.
6054[REDACTED]0	2	20-05[REDACTED]0
6054[REDACTED]0	6054[REDACTED]0	20-05[REDACTED]0

[CBP Form 28 중 일부:
수입신고번호 등이 기재되어 검증 대상 물품을 특정하고 있는 사례]

Materials to Demonstrate Product Country of Origin under the UKFTA
I. About Exporter/Manufacturer
II. CBP Form 28, Request for Information
III. Tariff Classification and Country of Origin Certification under the UKFTA
IV. Additional Information
V. Evidence/References
한·미 FTA 하에서의 물품의 원산지 소명 자료
I. 수출자 / 제조자 소개
II. 검증대상 품목에 대한 설명
III.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IV. 추가 정보
V. 관련 증빙자료

36

일반적으로 해당 수입건 전체 물품에 대해서 검증을 하지만, 상기와 같이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검증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2. HS 코드 결정

수출품에 대한 HS 코드 결정은 실제 관세 및 특혜관세가 부과되는 수입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며, 수출자는 수입국에서 분류한 HS 코드에 맞추어 모든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CBP Form 28에 검증 수입건에 대한 HS 코드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HS 코드에 맞추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 모든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수입국에서 분류된 HS 코드라도 정확한 분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 분류된 HS 코드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나 특혜관세 양허율이 높아 유리한 경우라면 품목분류 근거자료를 활용하여 유리한 HS 코드로 주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미국에서 수입 시 신고인이 품목분류를 잘못할 수도 있으며, CBP 검증 요원이 검증을 위한 사전 검토 시 물품의 품명 등으로 보아 HS 코드에 이상이 있는 경우 품목분류를 입증하라고 요구하므로 CBP 메시지의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여야 한다.

14. CBP Office Message

For each of the items that are associated with line 001, 002, and 004 of the CBP Form [REDACTED], please provide the item, item number, description – illustrative and descriptive. What is each item? What is the function? What is it made of?

Furthermore, the items (listed above) on invoice DY [REDACTED] 92 associated with entry number AMT-[REDACTED] 286, classified under HTSUS 8512.90.9000; 8501.10.4060; 8612.40.4000 and 8501.31.2000, were imported into the U. S. and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was claimed under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UKFTA). A Certificate of Origin was received, dated [REDACTED] 12(PSR). This is notification that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is verifying the origination status of the goods pursuant to 19 U.S.C. 3805 note. The purpose of the verification is determine whether the good is origination per the rules of origins set forth in General Note 33 of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S.

*These are the items being verified:	
Part #	Description
SR [REDACTED] 01	
Parts of Gantry Loader and Conveyor Modifications Theta [REDACTED]	
1. Chain Guide 2. Pop Up Unit 3. Driving Driven Shaft 4. Orientation 5. Work Guide 6. Tool Box 7. Chain 8. Conveyor Block 9. Bolt Set	

[CBP Form 28 중 일부:
수입신고 시 기재된 물품명으로 검증 대상 물품을 특정하고 있는 사례]

36

3. 품목분류 근거자료

해당 수출품의 품목분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소명자료를 작성한다면 검증 성공 확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① 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서

품목분류사전심사는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할 수 없는 경우 관세평 가분류원에 의뢰하여 수출입 물품의 HS 코드를 확정하는 제도이다. 또한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며 분류 근거가 명확해지므로 검증 소명자료 작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② 품목분류 의견서

관세사 등 품목분류 전문가에게 품목분류를 의뢰하여 의견서를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앞서 설명한 품목분류사전심사와 같은 법적 효력은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품목분류 의견서 예시

품목분류 의견서 (Tariff Classification Statement)	
Date: 2016.2.28. 작성자(Declarer): NEO Customs Corp., SUN KYUNG LEE	
품명(품번) Name (Model no.)	CAR BLACK BOX
사진 Photo	 
HS CODE	8525.80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플라레이저(Television cameras, digital cameras and video camera recorders)
제품설명 (Description of Good)	자동차 내부에 장착하여 차량의 충격을 감지하여 전후 약 10초간의 사고영상 및 음성, 차량의 위치 및 속도 정보 등을 자동 또는 수동 녹화하여 저정매체에 저장함. Install the Car Black Box inside cars. The device automatically or manually records various data and saves the events of the accident, voice, location and speed, etc. about 10 seconds before and after the collision.
분류근거 (Tariff Classification Basis for)	- 관세율표 제8525호의 용어에서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플라레이저로 규정하고 있음. According to The Tariff Classification the heading 8525 includes "Transmission apparatus for radio-broadcasting or television, whether or not incorporating reception apparatus or sound 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television cameras, digital cameras and video camera recorders." (...이하 생략)

③ 세계 HS 정보시스템 (http://www.customs.go.kr/kcs/home/wtm_index.po)
세계 HS 정보시스템에서는 관세율표 및 해설서 영문본과 품목분류사례 등을 국가별로 제공해주고 있다. 따라서 물품 설명에 해설서나 품목분류사례에 있는 영문을 참조하여 작성한다면 보다 전문성이 부여된 자료를 완성할 수 있다.

④ 미국 품목분류사전심사 사례 사이트 <CROSS> (<http://rulings.cbp.gov/>)
미국의 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사례를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든 사이트로 'Customs Ruling Online Search System ; CROSS'에 접속하여 관련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4. 검증소명자료 작성예시

물품 설명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소명자료를 작성한다.

① 검증 대상에 대한 간략한 설명

미국의 수입자로부터 CBP Form 28을 수취하였으며, 해당 검증 대상에 대한 설명과 한·미 FTA에서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설명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무난하다.

We received the CBP Form 28 from our client, ABC Company, in September 09, 2015, which required us to provide materials to demonstrate that our 00000(품명) exported on February 13, 2015 satisfy the criteria of the determination of origin under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UFTA). We hereby furnish information for the demonstration of the origin of the said products as follows.

② 검증 대상품목에 대한 품명과 HS 코드 등을 기재

1. Exported Goods : STROLLER PART (Invoice No. 0000-0000)
2. Tariff Classification (HS Code) : 8715.00 Baby carriages and parts thereof

③ 물품에 대한 설명

관세율표 해설서 등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관련증빙자료(품목분류의견서, 품목분류사전심사결정서, 품목분류 사례 등을 별첨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의견서 등의 관련증빙 자료를 소명자료에 바로 넣는 것은 양이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에 별첨으로 하는 것이 좋다.

1) Description of Good(s)

- 물품 사진, 기능, 용도, 재질 등을 물품 카다로그 등을 활용하여 기재하거나 별첨.
- The product cannot be used independently and must be used along with the stroller by covering it over the stroller to protect the baby inside from wind, rain, snow and dust.

* Refer to (att.#11) [물품사진, 카다로그 등 관련 서류 별첨]

* 작성된 예시는 참고를 위한 것으로 실제 작성 시 영문법 등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 HS Code : 8715.00

① According to the Tariff Classification, the heading 8715 includes "Baby carriages and their parts". This item is joined stroller front. The function of this good is protecting the baby from the external environment such as wind, rain, air pollution and so on.

② In accordance with Rule 1 and Rule 6 of Gener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Harmonized System, the above goods are classified into the subheading 8715.00, because they were identifiable as being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baby carriages of this heading

* Refer to (att.#12) [품목분류의견서, 품목분류사전심사결정서 등 관련자료 첨부]

④ 원산지결정기준 설명

상기에서 품목분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 HS 코드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재한다.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문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선택기준인 경우 원산지 판정에 사용된 판정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❷

Criteria of the Origin Determination (UK FTA)

HS	Division	Item	Preference Criterion
8715.00	1	Baby carriages and parts thereof.	A change to heading 8715 from any other heading (CTH)

[참고]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조회방법

관세청FTA포털(yesfta.customs.go.kr) → FTA자료실 → 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 → '미국' 선택 → 검색창에 HS 코드 6단위 (871500) 입력



전국 FTA 활용 지원기관 안내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FTA 활용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FTA는 바로 중소기업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FTA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주저 말고 FTA 지원 기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서울

- FTA무역종합지원센터 (국번 없이) 1380
- 서울본부세관 02-510-1568
- 중소기업진흥공단 본사 02-769-6947, 6957
- 서울지역본부 02-6678-4115

경기

- FTA활용지원센터(경기 북부) 031-995-7480~1
- FTA활용지원센터(경기 남부) 031-546-6772, 6770
- 평택직할세관 031-8054-7042
- 중소기업진흥공단 031-259-7904

강원

- FTA활용지원센터 033-257-4071
- 중소기업진흥공단 033-259-7634

충북

- FTA활용지원센터 043-229-2729, 2722
- 중소기업진흥공단 043-230-6833

경북

- FTA활용지원센터 054-454-6601(134)
- 중소기업진흥공단 054-476-9312

대구

- FTA활용지원센터 053-222-3111~2
- 대구경북본부세관 053-230-5251
- 중소기업진흥공단 053-601-5262

울산

- 울산FTA활용지원센터 052-287-3060~1
- 중소기업진흥공단 052-703-1132

부산

- 부산FTA활용지원센터 051-990-7125
- 부산경남본부세관 051-620-6637
- 중소기업진흥공단 051-630-7404

경남

- 경남FTA활용지원센터 055-210-3043
- 중소기업진흥공단 055-212-1373

대전

- FTA활용지원센터 042-480-3045, 3076
- 중소기업진흥공단 042-866-0153

전북

- FTA활용지원센터 063-711-2047, 2045
- 중소기업진흥공단 063-210-9911

전남

- FTA활용지원센터 061-288-3831
- 중소기업진흥공단 061-280-8040

광주

- FTA활용지원센터 062-350-5863
- 광주전라본부세관 062-975-8051
- 중소기업진흥공단 062-600-3051

제주

- FTA활용지원센터 064-759-2577
- 중소기업진흥공단 064-751-2054

글 최효찬 자녀경영연구소 소장(문화박사)
사진 한국경제신문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화기기 아니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스마트폰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게 되는 또 다른 감각으로의 확장을 경험하게 된다. 사진은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갤럭시 기어VR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



최효찬의 인문학 강의: ⑥미디어의 이해

부동산 '큰손'은 왜 역세권을 좋아할까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명제에 답이 있다

우리는 흔히 미디어의 보도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창을 만든다. 사람들과 미디어에 보도된 내용을 소재로 이야기를 나눈다. 이때 같은 뉴스를 보도할 때 미디어가 달라도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신문으로 보도하는 TV로 보도하든 사람들은 같은 내용으로 받아들인다고 여긴다.

때로 하나의 명제가 세상의 이치를 명쾌하게 이해하게 해 준다. 캐나다의 영문학자이자 미디어비평가인 마셜 매클루언이 1964년 내놓은 〈미디어의 이해〉에서 제시한, 그 유명한 '미디어는 메시지다(The Medium is The Message)'라는 명제는 기존의 미디어에 대한 고정관념을 전복시켰다. 즉 미디어가 '인간의 감각을 확장시켜왔다'는 새로운 미디어 개념을 정립시켰다. 같은 내용이라도 미디어가 다르면 내용도 달라

지고 세계를 보는 눈도 달라지게 한다는 것이다.

미디어는 메시지다

이 명제의 의미는 쉬운 듯하지만 혼동을 주기 십상이다. 흔히 특정 물질을 어떤 그릇에 담든지 간에 그 물질은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미디어도 마찬가지였다. 미디어는 형식적인 도구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메시지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해왔다. 미디어가 달라도 뉴스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매클루언은 이런 통념을 전면적으로 뒤집고 미디어에 따라 인간의 감각이 달리 확장되면서 인식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춘향전'의 경우 소설 텍스트로 읽을 때와 달리



마셜 매클루언(1911~1980)
캐나다의 미디어 이론가이자 문화비평가인 마셜 매클루언은 1964년 〈미디어의 이해〉라는 저서를 통해 '미디어는 메시지다',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영화로 보면 시청각적 효과를 중시하는 영화 매체의 특성상 춘향이와 이 도령의 관계를 매우 '육감적'으로 접근하게 된다. 영상이미지에 따라 춘향이의 절개에 성적 도취와 같은 에로적 색깔이 부각되는 것이다. 뮤지컬로 춘향전을 만들면 커다란 무대와 극적인 사건을 강조하는 매체의 특성으로 인해, 이 도령과 춘향이의 사랑보다는 변학도와 춘향이의 관계에 주목함으로써, 사랑이나 의리보다는 남녀 간의 삼각관계를 주요 테마로 부각시킬 수 있다. 춘향전은 영화나 TV, 라디오, 마당극 등 어떤 매체로 연출되는가에 따라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인간의 감각은 달리 확장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매클루언은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명제를 통해 미디어가 단순히 '내용'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 감각을 확장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즉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매체가 보도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감각이 달리 반응하면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흔히 우리는 매체라고 하면 거의 자동으로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와 같은 대중매체를 연상하곤 한다. 매클루언은 여기에 철도, 주택, 돈, 시계, 자전거, 자동차, 비행기, 무기, 자동화, 게임, 전신, 타자기(노트북) 등 도구나 수단을 미디어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다. 미디어는 단순히 송신자와 수신자를 매개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연장으로 예컨대 자동차 바퀴는 발의 연장, 책은 눈의 연장, 옷은 피부의 확장, 전기기술은 중추 신경의 확장이라는 것이다. 철도라는 매체는 단순히 화물이나 승객을 운반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 철도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종류의 도시들(베드타운, 관광도시, 탄광도시 등)과 노동, 여가를 창출했다. 철도는 여가와 여행문화의 변화를 초래하고 휴양

도시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철도가 단순히 사람이나 사물을 수송하는 기능을 하지만 나아가 도시인들의 전원생활을 가능하게 했고 여가생활을 촉진시킨 것이다.

더욱이 전철이나 고속철(KTX)이 신설되면 특히 재테크와 관련한 인간의 새로운 감각들이 확장된다. 새로운 '역세권'이 생기면서 부동산 '큰손'들이 몰려들어 부동산 값이 폭등하는가 하면 전원생활이나 펜션 등 새로운 여가문화를 창출하고 관련 레저산업들도 생겨난다는 것이다. 큰손들은 철도로 인해 누구보다 먼저 재테크 감각이 확장되어 반응하는 사람들이다. 매클루언의 언표대로 철도가 재테크와 관련한 인간의 감각을 확장시킨 것이다.

철도는 중심-주변 구조를 확대하고 통합하기도 한다. 예컨대 전철이 천안과 춘천으로 확대되면서 '수도권'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철도는 운행 시간에 따라 시간에 대한 개념을 심어줘 인간을 '시간기계'로 만들었다. 출퇴근 시간에 전철시간에 맞춰 마치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이다.

스마트폰이 양성한 촉각의 노예

매클루언은 "우리는 우리가 보는 대로 된다. 우리는 우리의 도구를 만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도구가 우리를 만든다"고 말한다. 매클루언은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하면서 두 가지 혁명적인 기술의 발전 즉, 15세기 중반의 인쇄술의 발명과 19세기 후반 이후 전기의 새로운 이용방식들로 인한 인간의 변화를 진단한다. 인간이 도구를 만들었지만 그 도구를 이용하면서 새로운 인간의 문화를 창조해내는 것이다.

이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단순히 통화를 위한 도구로서 스마트폰에 그치지 않는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스마트폰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게 되는 또 다른 감각으로의 확장을 경험하게 된다. 잠시라도 스마트폰을 터치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단절되는 느낌으로 빠져드는 것이다.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란 노래가 전자구총에 걸쳐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유튜브를 통한 영상이미지 덕분이었다.

매클루언은 칼 융의 '분석심리학 논고'를 인용하며 비유하는데, 칼 융은 로마 패망의 원인을 노예제에서 찾기도 했다. "모든 로마인들은 노예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노예와 노예들의 심리가 고대 이탈리아에 흘러 넘쳤고 로마인은 부지불식간이긴 하지만 내면적으로 노예가 되어버렸다."

요즘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책을 멀리하고 전자매체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수많은 욕망에 자극받는 '촉각의 노예'라고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마치 노예에 둘러싸였던 로마처럼 '촉각의 노예'에 우리 사회가 둘러싸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촉각형 인재'들만으로는 미래를 창조적으로 리드할 수 없다. 스마트폰을 만들어 테크놀로지 혁명을 이룬 스티브 잡스는 20대 시절 리드칼리지에서 인문고전에 푹 빠졌던 '시각형 인재'였지 '촉각형 인재'가 아니라는 사실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❷

정리 김은진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FTA NEWS



한·중미 FTA 제3차 협상 개최

역동적인 경제권으로 부상하는 중미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수출 및 투자진출 확대

한·중미 FTA 제3차 협상이 2월 22일부터 26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다. 중미 6개국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이며, 2014년 기준으로 중남미에서 GDP 규모 5위(2,098억불), 인구 규모 3위(4,350만 명)를 차지했다. 우리는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고, 중미는 멜빈 E. 레돈도(Melvin E. Redondo) 온두라스 경제통합통상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중미 6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은 지난해 6월 협상을 개시를 선언한 이래 지난 11월까지 3차례 협상(TOR 1회, 본협상 2회)을 진행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높은 수준으로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해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 통관, 정부조달, 협력, 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술무역장벽(TBT), 총칙 등 주요 장(챕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3차 협상부터는 상품, 서비스·투자, 금융, 통신, 정부조달, 협력 분야 등에 대한 협의를 가속화함과 동시에, 노동 환경 챕터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 특히, 우리기업의 대중미 주력 수출상품에 대한 시장개방(양허) 협상을 본격화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중미 시장 선점과 점유율 확대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FTA정책관은 “한·중미 FTA를 통해 최근 감소 추세에 있는 대중미 교역의 반전 계기를 마련하고, 최근 역동적인 경제권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미시장에 대해 우리기업의 수출 및 투자진출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중미 FTA를 조속히 타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RCEP 제11차 협상 브루나이서 개최 상품, 원산지 등 협의



사진은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RCEP 참여국 정상회의 모습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11차 협상이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브루나이 반다르세리베가완에서 열렸다.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아세안(ASEAN) 10개국 및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여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논의하는 경제협정이다. 우리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제11차 협상은 지난 2015년 11월 22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2016년 타결 목표를 담은 ‘RCEP 정상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협상이다. 공동선언문은 장관회의에서 도출된 성과를 바탕으로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실질적 협상 및 협정문 협상을 심화시키고, 각국 협상단이 노력을 배가하여 RCEP 협상의 2016년 타결을 기대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된 바 있다. 이번 협상은 정상들의 연내 타결 노력 지침을 바탕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 시장 접근 협상 및 원산지 분야 협정문 협상에 대해 깊이 있게 진행되었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분과만 개최, 기타 분과는 별도 회기간 협상 개최될 예정이다.

FTA 원산지 전문가 간담회 개최 이해하기 쉬운 FTA 원산지 기준 마련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작년 발효된 중국·베트남 등과의 FTA 활용촉진과 2016년 FTA 원산지 협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원산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제단체, 주요 업종단체 원산지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원산지 자문관, 학계 전문가 등 20여 명의 국내 FTA 원산지 전문가들이 참석해 FTA 원산지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업종별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FTA 원산지 협상 자문단’을 구성하여 FTA 원산지 협상 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작년 수출입이 전반적으로 부진했지만 FTA 발효국과의 교역은 선방한 것으로 조사되어 FTA가 우리 무역의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에도 FTA를 활용한 수출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협상 중인 FTA에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활용하기 용이한 원산지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상품에 한해 FTA 특혜관세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원산지 기준이 까다롭게 설정되어 우리 수출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양허 효과는 실현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협상 개최 이전에 협상안 마련을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협상당사국과의 협상 중에도 쟁점사안 발생 시 해당 부처, 업계 담당관과 긴밀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키로 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경식 FTA무역규범과장은 “우리 기업이 사용하기 쉬운 FTA 원산지 기준 마련이 중요하고, 수출을 왜곡하지 않는 중립적인 원산지 기준 마련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원산지 협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의견을 FTA 원산지 협상 시 참고할 예정이며, 향후 금번 간담회와 같은 전문가와의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Information

2016년 OK FTA 현장방문 컨설팅 및 영세기업 원산지관리 컨설팅 안내

| 사업목적 |

- OK FTA 현장방문 컨설팅 효과적인 원산지관리 체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종합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FTA 활용 및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능력 배양
- 영세기업 원산지관리 컨설팅 FTA 활용 경험이 거의 없고 전문지식과 인력 부족으로 원산지확인(증명)서 발급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을 FTA 전문 컨설턴트가 밀착 지원

| 사업내용 |

구분	OK FTA 현장방문 컨설팅	영세기업 원산지관리 컨설팅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대기업 제외)	매출액 20억원 이하 중소기업
★대중국 수출업체 및 한·중 FTA 활용 희망기업 우선 지원		
	체계적인 FTA 활용 능력 확보를 위해 품목 분류에서부터 원산지 판정 및 사후검증에 이르기까지 전반적 사항을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활용실태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0계획 수립 ◎ 주요 원재료 및 원제품 품목분류 지원 ◎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증명(확인)서 발급 ◎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점검 및 개선 ◎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전략 수립 ◎ FTA 활용 업무매뉴얼 제공 등 	원산지확인(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영세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기초서류 작성 및 원산지 관리에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관리 현황 진단 ◎ 원산지 증빙서류 검토 및 작성 지원 ◎ 원산지관리시스템 실습 및 시뮬레이션 ◎ 원산지 소명자료 관리방법 교육 ◎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 제공 등
지원기간	2개월	3개월
지원일수	최대 8~10MD	최대 10MD
기업 분담금	0~40%(*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	무료
모집기간	2016. 7. 31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기업분담금 현황표 | 직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0~40% 차등 적용

직전년도 매출액	기업부담
20억 원 이하	무료
20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지원금액의 10%
50억 원 초과~500억 원 이하	지원금액의 20%
500억 원 초과~1,500억 원 이하	지원금액의 30%
1,500억 원 초과	지원금액의 40%

| 신청방법 |

-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fta1380.or.kr)의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이메일(okfta@kita.net)로 제출
-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사업진행 동의서 1부, 정보제공 동의서 1부, 직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 1부, 제품설명서(카탈로그 등), 재료명세서(BOM) 1부

| 문의처 |

- 담당자: FTA종합지원센터 원산지지원실(www.fta1380.or.kr)
- 이메일: simkw@kita.net • 전화: 02-6000-7584


독자의 소리

'함께하는 FTA'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무역 업무를 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함께하는 FTA를 보면서 몰랐던 사실이나 조금 어려웠던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다르지만 여러 분야의 무역업 종사자 분들을 보면서 힘들 얻습니다.

류광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FTA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없었는데 매달 정기적으로 관련 책자를 읽고 새로운 지식 정보를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FTA 체결로 한발 더 세계시장으로 나가는 우리나라를 희망해봅니다.

김선영 서울 도봉구 방학1동

전국 FTA활용지원기관 안내를 통해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이 FTA를 이용해 수출 경쟁력을 키우도록 한다는 것이 돋보였습니다.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FTA를 활용하기를 기대합니다.

최지만 전북 군산시 개정면 능동1길

중국 식품시장 FTA 확대기사가 인상 깊네요. 가깝고 교역도 많지만 선입건이 많은 중국과의 교역, 더욱 믿을 수 있고 서로에게 원-원이 되는 무역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한찬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베트남이 작년 수출 4위국으로 부상한 만큼 시기적으로 가장 수요가 많은 상품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단계적, 품목별로 접근해 효율적인 수출전략을 펼쳐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종만 부산시 북구 화명도시로

함께하는 FTA

March 2016 / vol.46 www.fta.go.kr

알림

독자엽서를 이메일로도 받습니다.
보내시는 분의 이름, 주소, 연락처와 엽서의 질문 답변
내용을 적어서 mitypen@korea.kr로 보내주시면,
좋은 의견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존처럼 우편엽서로 보내셔도 됩니다.

함께하는 FTA

독자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전화번호

주소

E-mail

□□□□□

받는 사람

〈함께하는 FTA〉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

3 0 1 1 8



〈함께하는 FTA〉는 독자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열린 공간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함께하는 FTA〉를 만들어가는 에너지입니다. 소중한 의견을 3월 31일까지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되신 분들에게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드립니다.

〈함께하는 FTA〉를 보신 소감은?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는 무엇이었나요?

이유를 적어주세요.

〈함께하는 FTA〉를 어디에서 보셨나요?

예) 은행, 관공서, 도서관 등

〈함께하는 FTA〉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은?

(또는 FTA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정기구독(무료) 신청을 받습니다.

신규 독자 신청 또는 기존 독자 주소 변경은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여
이메일(mitypen@korea.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호에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아래 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함께하는 FTA〉 2월호
독자 이벤트 당첨자 명단

김선영 서울 도봉구 도봉로
류광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박태진 경기 의정부시 부용로
배종만 부산 북구 화명도시로
오은미 충남 서천군 총판로
이미정 부산 사하구 오직로
정은주 경기 양평군 지평면 의병로
천병오 전남 해남군 해남읍
최지만 전북 군산시 개장면
한찬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독자엽서 당첨상품 반송 시 1년 간
(우체국 배송자료 보관 시한) 보관합니다.

함께하는 안전점검! 함께가는 안전강국!

2016 국가안전대진단

2016년 2월 15일~4월 30일

민관합동 점검

함께 참여하는 안전신고

안전신고로
신고하세요

안전신고

진단
주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민간전문가 참여)

점검
대상

안전사각지대, 위험시설,
안전신고 대상 등

점검
방법

민관합동점검,
국민은 안전신고 웹(www.safepeople.go.kr)
또는 앱을 통해 참여

FTA 활용과 인증 표준 업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FTA무역종합지원센터

1380

국내외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전국 어디서나
FTA 콜센터 1380,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FTA 콜센터 1380과 인증 표준 콜센터 1381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상담,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FTA 콜센터 1380

FTA 협정별·품목별 원산지 증명서 작성,
사후검증 대응,
원산지시스템 구축 상담 등
FTA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350여 개의 해외인증과 300여 개의 국내 인증 및
4만 3천여 개의 표준 정보를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품목별·국가별
맞춤형 정보로 가공해 제공